

# 유럽의 복지개혁 동향

---

2012. 12.

연구책임자

최성은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강성범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김은정 (스페인, 아일랜드, 이탈리아)

조재현 (영국, 독일)

최영은 (그리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목 차 >

1. 영국의 최근 복지개혁 .....	1
2. 프랑스의 최근 복지개혁 .....	10
3. 스웨덴의 최근 복지개혁 .....	21
4. 독일의 최근 복지개혁 .....	28
5. 그리스의 최근 복지개혁 .....	36
6. 스페인의 최근 복지개혁 .....	43
7. 이탈리아의 최근 복지개혁 .....	50
8. 포르투갈의 최근 복지개혁 .....	56
9. 덴마크의 최근 복지개혁 .....	61
10. 네덜란드의 최근 복지개혁 .....	68
11. 아일랜드의 최근 복지개혁 .....	73

## 1. 영국의 최근 복지개혁

### ◆ 최근 영국에서는 복지의존도를 낮추고 근로와 복지의 연계를 강화하며, 복잡한 전달체계와 복지시스템을 단순화하는 복지개혁법안이 의회를 통과

- 기존의 각종 복지수당을 통합급여 신설을 통해 하나의 제도로 묶고, 급여규모, 자산조사, 급여의 관리를 단일화 함
- 통합급여는 근로자 중위소득을 상한액으로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여 특정 대상 가구의 중복수혜등 효율성 저해요소를 제거하고 근로유인을 강화
- 보건부문에서는 국가의료서비스 (National Health Service) 제도의 공급측면의 비효율성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시장화를 유도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려는 개혁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보다 최근에는 일차의료기관부문의 개혁등을 담은 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법안이 통과하여 2013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연금재정안정화를 위하여 연금지급 연령을 늦추는 계획을 앞당겨 실시하며, 단일 연금제, 각종 수당 축소등의 연금개혁이 지속됨

□ (복지개혁) 2012년 3월 9일 영국정부는 복지개혁법(Welfare Reform Act)를 국왕 재가로 법률로 확정

- (배경) 기존의 복지체계는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미약하고 제도가 복잡하다는 판단에 영국정부는 2011년 복지개혁법안(Welfare Reform Bill 2011)을 의회에 제출 (2011년 2월 16일)
  - 개혁법안의 내용은 2010 복지개혁백서(Universal Credit: Welfare that Works)의 내용을 포함
  -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에 따르면 약 6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인구가 각종 수당을 받고 있으며, 500만 명에 달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중 140만 명은 9년 이상 실업급여에 의존
  - 사회보장관련 수당은 30여 종류에 달하며 각종 수당제도가 세분화된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가구의 중복수혜 문제점 야기

- (주요내용) 복지개혁은 크게 통합급여 신설, 수급조건 강화, 장애심사 강화, 주택급여 제한 등
- ① (통합급여 신설) 통합급여 (Universal Credit) 신설을 통해 다양한 기준에 따른 개별급여들을 단순화
  - 소득보조, 구직자 수당, 고용 및 지원수당, 주거급여, 근로세액공제 및 아동세액공제제도, 장애인생활급여를 통합하여 대체
  - 급여 수급자들이 소득변화에 따른 복지급여 변화를 쉽게 이해하여 근로유인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단순화
    - 근로소득이 늘어날 경우 복지급여가 줄어드는 비율을 65%로 단일하게 설정 (2013년 도입될 시점에서 비율 확정 예정)
  - 통합급여의 상한액은 근로자 중위소득 수준인 가구별 주당 500 파운드, 연간 26,000 파운드로 제한
  -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온라인 청구 서비스 등 실시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
  - 통합급여는 2013년 10월부터 2017년까지 3단계에 걸쳐 시행
  - 물가상승에 연동되던 각종 급여를 평균 임금 상승에 연동하여 50억 파운드의 예산 절감

**< 통합급여 주요 내용 >**

분야	세부내용	시행시기
아동출연기금 (Child Trust Funds)	추가지원 폐지 (현 자산 소진 때까지 사용)	2010. 12
교육유지수당 (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	신규지원 폐지 (기존 수혜아동은 2012 학기까지만 지원)	2011. 01
임신보조금 (Health in Pregnancy Grant)	폐지	2011. 01
생활불능급여 (Incapacity Benefit) 및 소득지원급여 (Income Support)	전 수혜자 대상으로 재검사 및 재조사 실시	2011. 01
고용지원급여 (Employment Support Allowance, ESA)	선정 과정에서 정밀의료진단을 체계화	2011. 03
지역주거급여 (Local Housing Allowance)	수준 아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주당 15파운드 급여 폐지	2011. 04
세제급여 (Tax Credits)	급여 수준을 축소 (연 4만 파운드 이상 소득가계는 수혜대상에서 제외)	2011. 04
국민연금 (Nation Insurance)	기여분 0.5% 인상	2011. 04
편부모소득지원 (Lone Parents and Income Support)	아동이 5세가 되면 근로가능여부 판단 후 구직급여로 전환	2011. 10
근로지원급여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수혜대상에서 청소년 제외	2012
장애인생활급여 (Disability Living Allowance)	재가돌봄홈 거주자에게 보조금 지급 중단	2012
구직급여 (Jobseeker's Allowance)	장기간 신청자는 주거급여 수혜를 1년으로 제한	2012
장애인생활급여(Disability Living Allowance)	수혜자 전원 재조사	2013
근로수당급여, 미망인연금, 장애거주급여 수혜자 가족을 제외한 모든 급여대상자의 총급여	개인당 주당 350파운드, 가족당 500파운드로 제한	2013
자산조사관련급여 수혜자	신규 편입자 모두 통합급여로 통일	2013

- ② (수급조건 강화)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은 구직활동을 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구직활동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금전적 체제를 기존보다 강화 - 근로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최소 3개월간, 두 번째 위반 때부터는 6개월간, 고의 또는 상습 위반의 경우 최대 3년간 급여지급 중단
- ③ (장애심사 강화) 장애인생활수당을 받는 16~64세 모든 장애인은 '13~'16년 중 재평가를 거쳐 새로운 개인독립급여 수급자로 전환 예정이며 재평가 탈락시 수당지급 정지

- ④ (주택급여 제한) 저소득층 공공주택 세입자가 필요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을 사용하여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거 급여 자격요건을 강화
  - 15-24세에 대해 주택급여(Housing Benefit)를 폐지해 20억 파운드의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주택급여의 상한을 새로 설정
- (기대효과) 영국정부는 FY2014~15까지 180억 파운드의 재정절감을 기대

□ (보건·의료 개혁) Health and Social Act 2012 최종 입법화 (2012. 3. 27)

- (배경) 국가의료서비스 (National Health Service)의 중앙집권화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저하와 의료서비스 공급측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차의료 부문의 변화를 통한 보건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시장화를 유도
- (주요내용)<sup>1)</sup>
  - 2013년 4월까지 1차 진료기관(Primary Care Trusts)과 전략의료기관(Strategic Health Authorities)의 폐지
    - 600억에서 800억 파운드에 달하는 보건의료예산에 관련된 업무를 일반의사 (General Practitioners, GPs)의 컨소시엄 형태인 지역 임상커미셔닝 그룹 "clinical commissioning groups"으로 이관
    - 일반의사 활동 지원을 위한 독립적인 위원회인 Public Health England 기관을 새롭게 설립
  - NHS를 민간부문에게도 문호를 개방
    -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민간 병원들의 환자들을 상대로 하는 NHS 트러스트들과의 경쟁을 허용

**< Box 1 > 영국의 보건의료체계**

- 제도유형
  - 사회보험방식과 사회부조방식(현금급여)과 국가보건서비스(NHS)방식 (현물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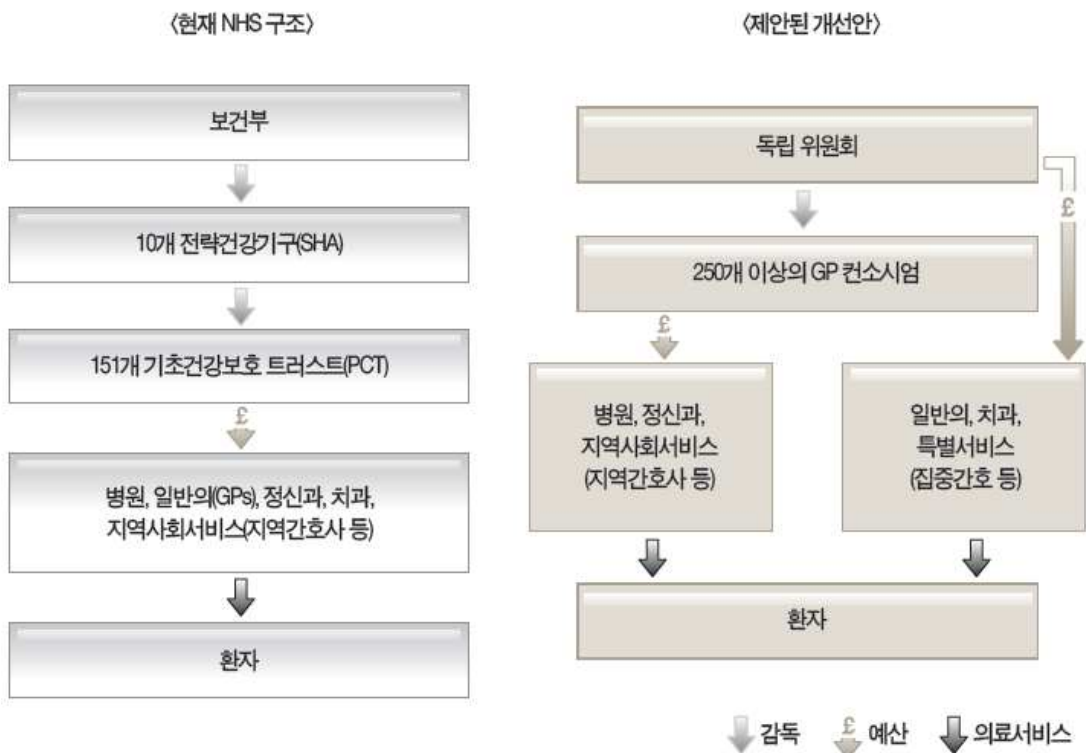
1) 2010년 7월 12일 출간된 NHS 백서에 기반

- 일차의료: NHS 다이렉트, 진료소, 치과, 안경사, 약국등
- 이차의료: 급성트러스트, 응급트러스트, 정신의료트러스트등

○ 적용 대상

- 국가보건시스템(NHS) : 영국의 모든 법적인 거주자

○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은 2013년부터 시행)



자료: 이정희(2011), “영국 NHS 개혁과 쟁점 및 논란” 에서 재인용

○ 재원

- 근로소득자 : 납부세금의 2.05%와 주당 소득이 844파운드 이상인 자의 초과세금
- 자영업자 : 납부세금의 15.5%
- 고용주 : 납부세금의 1.9%, 법정병가수당 전액, 법정 출산 수당의 8%
- 정부 : 법정병가수당 전액, 법정 출산수당의 92% (경우에 따라 100%), 자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복지 수당 전액
- 현물급여 : 조세에서 조달, 국민보험료 및 환자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물급여에 조달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영국”

□ (사회서비스·아동)

- (배경) 재정건전화 과정에서의 고소득층 혜택의 형평성 문제를 강조
- (주요내용) 2013년 1월 7일부터 고소득층에 대한 육아수당 폐지
  - 가정 연간 소득이 외벌이 경우 5만 파운드 이상, 맞벌이 경우 10만 파운드 이상인 경우부터 각각 6만 (12만) 파운드까지 육아수당의 지급 폐지
  - 5만 (1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소득부터 100 파운드가 증가할 때 마다 육아수당은 1%씩 감소
  - 시행에 있어서는 육아수당의 지급 중단의 형태가 아닌 추가 소득세 부과 형태로 실행
  - 현재 첫째에게는 주당 23.30 파운드, 둘째부터는 주당 13.40 파운드를 지급하는 제도에서 가정당 수혜대상 아이의 숫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가로 논의 중
- (재정·기대효과) FY2012-13에는 24억 파운드, FY2014-15에는 25억 파운드의 공공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

□ (연금개혁) Pensions Act 2011 (2011. 11. 3)과 Public Service Pensions Bill 2013 (2012. 9. 13)을 통한 연금개혁

- (배경) 2011년 연금 재정적자는 800억 파운드에 달하였으며 연금 수급자 1명당 노동자는 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던 1926년의 9명에서 2011년에는 3명으로 감소
  - 인구고령화로 건강, 사회보호서비스 등 관련 지출이 FY2016-17에서 FY2061-62 사이에 GDP의 5%만큼 증가할 전망
- (주요내용)
  - ① 연금지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계획을 당초 2034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겨 실시
    - 2012년 3월 21일 재무부 오스본 장관은 연금수령 나이를 수명 증가와 연계해

자동으로 조정할 계획임을 발표 (향후 70세까지 늦추는 것을 계획)

- ② 연금체계를 단순화하여 단일연금으로 대체
  - 단일연금제도는 현 연금제도에 추가비용 없이 모든 연금 가입자에게 주당 140파운드를 수급
- ③ 자동등록제도 도입을 통해 근로자 개개인의 기여분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기대
- ④ 공공서비스연금개혁을 통해 향후 50년간 공공서비스 연금지출을 40% (4,300억 파운드) 절감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계획 중 650억 파운드를 PSP Bill 2013을 통해 실현
- ⑤ GDP 대비 순비용이 FY2010-11의 1.5%에서 FY2060-61에는 0.9%까지 감소하는 것을 목표

## <Box 2> 영국의 연금제도

◇ 연금체계: 국가와 민간의 강제 혹은 자발에 의한 3층 체계

층(Pillar)	주요 내용
1층 기초 국가연금 (국가, 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연금</li> <li>● 자산조사에 의한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보조</li> <li>* 연금크레딧</li> </ul> </li> </ul>
2층 국가연금 (국가/민간, 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RPS</li> <li>* 국가이층연금 (2002~)</li> </ul> </li> <li>● 민간부문 (적용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연금 (FDC형 혹은 확정급여형)</li> <li>* 개인연금</li> <li>* 스택홀더연금</li> </ul> </li> </ul>
3층 추가적 임의 기 여 및 기타 사보험 (민간, 자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연금/개인연금/스택홀더연금에 부가적기여 (AVCs 혹은 FSAVCs)</li> <li>● 다른 형태의 저축이나 보험</li> </ul>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외국의 연금제도: 영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국의 사회보장  
제도: 영국”

### ○ 노령연금 수급요건

#### - 수급요건

- 가입기간: 완전연금 수령을 위해 근로기간(남자 44년, 여자 39년)의 90% 이상 보험  
료를 납부 (부족한 납부연수에 비례하여 급여 감액)
- 수급개시 연령: 남성 65세, 여성 (2010~2020까지 60→65세), 2024~2046년 남녀 65→  
68세로 조정
- 기여 또는 다양한 국민보험가입크레딧으로 30년 자격년수를 채우면 완전연금 수급

#### - 보험료율

- 피용자: 소득상한까지 12%, 상한 이후 소득 2%
- 사용자: 소득하한 이상 소득에 대하여 13.8%
- 자영자: 주 2.50파운드, 소득상한 이상 소득에 9%, 임의가입 주 12.6파운드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외국의 연금제도: 영국”

## 참고문헌

- 한국노동연구원, “영국 NHS 개혁과 쟁점 및 논란,” 2011.5
- 한국노동연구원, “영국의 사회보장급여 개편 동향,” 2011.6
- 한국노동연구원, “최근 영국 공공서비스 연금제도 변화와 2012년 예산안에서의 관련 개정안의 고찰,” 2012.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국의 복지 개혁: 일하는복지(welfare that works)를 중심으로,” 2011.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 영국,” 2012.7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영국의 복지 개혁과 취업 장려 정책,” 2012.7
- Deaprtment for Work and Pensions, "Pensions Act 2011 - Summary of Impacts," 2011.11.21
- D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Welfare Reform 2011 Assessment of Impacts," 2012.5.30
- EU, "Europe 2020: UK National Reform Programme 2012," 2012.4
- HM Revenue & Customs, "High income child benefit charge," 2012.10.1
- Housing Systems Ltd., "Welfare Reform Timetable," 2012.3
- 국민건강보험 (<http://www.nhic.or.kr/>)
- 국민연금 (<http://www.nps.or.kr/>)
- 영국 국세관세청 ([www.hmrc.gov.uk/](http://www.hmrc.gov.uk/))
- 영국 노동연금부 ([www.dwp.gov.uk/](http://www.dwp.gov.uk/))
- 영국 보건부 ([www.dh.gov.uk/](http://www.dh.gov.uk/))
- 영국 재무부 ([www.hm-treasury.gov.uk/](http://www.hm-treasury.gov.uk/))

## 2. 프랑스의 최근 복지개혁

◆ 프랑스는 연금과 건강보험의 고질적인 재정적자 문제와 실업문제 극복을 위한 연금 및 의료보험 개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부조정책도 근로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10년 법정정년연령과 완전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연금개혁이 시행
- 2004년 의료보험 재정지출구조 개선을 위하여 주치의 제도 도입, 비용체계 개선, 의료접근성 강화등 지출측면 효율성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이 시행되었고, 이후에도 재정건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지속되고 있음.
- 2009년 기존 사회부조제도인 최소통합수당 (RMI)제도를 폐지하고, 여기에 한부모수당(API)를 통합하여 활동연대수당(RSA)으로 대체함.
  - 활동연대수당(RSA)은 기존의 공공부조가 장기실업에 빠지기 쉬운 측면이 있음을 개선하고 근로빈곤층의 취업유인을 강화하여 탈빈곤을 유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탄생
  - 고용정책도 고령층의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 (연금제도 개혁) 2010년 프랑스는 연금수급연령 상향 등의 연금개혁을 단행

- (목적) 2009년 기준으로 프랑스 GDP의 약 14.3%를 차지하는 연금지출 축소를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고 노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강화하는 것이 주목적
- (주요내용) 법정정년의 연장, 연금수급연령 상향 등으로 연금 지급 시기를 지연
- ① 법정정년연장을 기존 60세에서 62세로 연장
- ② 완전퇴직연금 수령 시점을 기존 65세에서 67세로 연장
- ③ 보험료 불입최고연한을 2020년까지 41.5년으로 연장하고 직업의 난이도 보상 차원에서 60세부터 퇴직금 수급이 가능한 노동불능비율을 10%로 설정

- 그러나 2012년 프랑스 정권교체 이후 개혁안은 일부 수정되어 프랑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일부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62세에서 60로 다시 환원
  - 18세 이전에 일하기 시작한 근로자, 1952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근로자, 출산휴가도 근로기간으로 가산됨에 따라 일찍 일하기 시작했고 자녀가 2명 이상인 여성
  - 본 제도는 2012년 6월 말 확정되었으며, 11월부터 효력 발생<sup>2)</sup>
  - 본 정책에 따라 2013년에는 약 11억 유로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에는 30억 유로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sup>3)</sup>

### <Box 3> 프랑스의 연금제도

◇ 연금제도 체계 : 프랑스의 공적연금제도는 기본연금제도 (1층), 소득비례형 보충연금 (2층), 임의가입식 추가연금 혹은 민간연금 (3층)의 3층으로 구성됨. 1층과 2층 연금까지는 강제가입이 되는 공적연금이며, 3층은 민간연금임. 한편 가입자의 취업형태별로 일반레짐, 독립레짐 (자영업 및 자유업종), 농업레짐, 연금레짐 (공무원), 특별레짐(특수직 공무원)으로 상이하게 운영됨.

2) 한겨레, “좌파 정부의 힘? 올랑드, 연금수령연령 62살->60살로 되돌려”, 2012. 6. 7.

3) BBC, "France's Hollande to lower state pension age to 60", 2012. 6. 6.

	일반레짐 (Régime général)	독립레짐 (Régime des indépendants)	농업레짐 (Régime agricole)	연금레짐 (Régime des pensions)	특별레짐 (Régime spéciaux)
		PERP	/	PERCO	
추가연금 (Régime supplémentaire)		ASV (Professions médicales libérales)		PREFON	
보충연금 (Régime complémentaire)	AGIRC-ARRCO		AGIRC-ARRCO	RAFP	특별레짐 (Régime spéciaux)
기본연금 (Régime de base)	CNAV	RSI CNAV-PL	MSA exploitants MSA-Salariés	CNRACL SPE	(Dont certains adossés à la CNAV)

Source : P. Penaud et. (2011)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 프랑스」, 2012. 7.에서 재인용

### ○ 기본연금제도

- 대상범위: 부과방식의 연금제도로 사회보장법에 의해 다른 특별제도에 가입되지 않은 모든 일반 피용자
- 유형: 퇴직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연금은 세부적으로 수혜자의 형태에 따라 수급방식, 수급액의 차이가 있음
  - 퇴직연금의 종류와 수급요건
    - 1) 완전노령연금
      - 수급요건: 160분기 이상 보험료 납부, 60세 이상, 소득이 없는 퇴직자
    - 2) 조기 퇴직연금
      - 수급요건: 총 42년간 가입한 근로자로 56세부터 조기퇴직이 가능
    - 3) 기타 연금제도
      - 감액연금, 가산연금, 부분연금 등은 가입기간이나 수급 요건에 따라서 소득대체율을 조정하여 연금수령액을 조절하는 연금제도

자료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세계의 연금제도: 프랑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 프랑스, (2012.7.)

□ (의료보험 제도 개혁) 인구고령화와 의료비지출 증가로 인한 의료보험의 재정적자 감축이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 있는 가운데, 1970년대부터 약 20여차례의 의료보험 개혁이 진행되어 왔음. 2004년 의료개혁은 의료보험의 체계적인 위함에 대비하여, 의료접근의 형평성, 의료서비스의 질, 사회연대성 제고를 목표로 의료보험제도 개혁을 시행하였음<sup>4)</sup>.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의료보험의 재정적자 문제가 다시 대두되기 시작하자, 2010년에는 의료보험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부담금을 높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 지고 있음.

○ (2004년 의료보험 개혁) 주치의 제도 도입, 비용체계 개선, 의료 접근성 강화 등 지출측면에서의 효율성 강화가 중심

①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의료접근의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1차 의료담당자인 주치의와 2차 의료담당자인 위탁의료 의료 전달체계 개선

- 주치의 제도는 의료서비스의 종합화와 일반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의 운영을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

②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체계 등을 개선<sup>5)</sup>

- '1유로 정액부담금' 부과하고 진료비 인상과 초과 적용을 부분적으로 반영하여 2010년까지 1일당 18유로의 정액 부담금을 지불하도록 개선

- 의료상담비를 공제 및 의약품에 대한 공제를 점차 축소

○ (최근 동향)

① 2009년에는 의료서비스 접근의 형평성, 질적 개선, 연대성 강화 등 의료보험 제도의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개선안을 발표<sup>6)</sup>

- 의료과정의 조직화를 통하여 16세 이상의 보험자는 주치의를 통하여 치료, 관리, 의료보험 시스템의 적용을 하도록 개선

- 모든 개인들은 의료 기록을 의무화 하고 이는 엄격한 보안 전산망에 등록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 프랑스」, 2012. 7.

5) EU, 「Annual Report 2012 Pensions, Health Care and Long-term Care : France」, 2012. 3.

6) 프랑스 의료보험 홈페이지

(<http://www.ameli.fr/l-assurance-maladie/connaitre-l-assurance-maladie/missions-et-organisation/l-a-reforme-de-l-assurance-maladie/comprendre-la-reforme-de-l-8217-assurance-maladie.ph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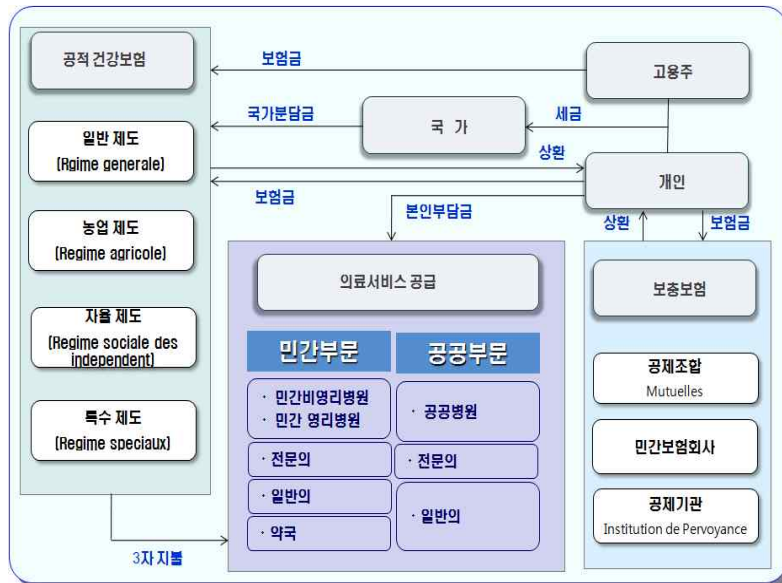
- ② 2010년 4월에는 지방보건청을 설립하여 지방보건행정관련 기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보건의료활동의 계획, 조직, 조정, 통제를 강화
- ③ 2010년 6월에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일환으로 의약품 종류에 따른 상환액 차등 지급, 일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상환액 감소, 의료 상담비 증가, 의료부문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증가 등을 시행
- 의료상담비의 경우 2012년에 일반의는 23유로로 증가하고, 전문의는 27유로로 증가
  - "Blue labels" 의약품에 대한 공제를 35%에서 30%로 인하
  - 의약품을 제외한 의료기기 사용료 공제를 65%에서 60%로 인하(심각한 질병의 경우 100% 공제)
  - 병원에 대한 고정 기여금 한도를 상향

---

7) IGP, 「Summary of Social Security and Private Employee Benefits : FRANCE」, 2011.

### <Box 4> 프랑스의 의료보험체계

- 의료보험 체계: 공적 의료보험은 직업군에 따라 일반레짐, 농업레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자율레짐, 특수직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레짐으로 구성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프랑스"에서 재인용

- 재원
  - 가입자 : 일반 근로자는 총소득의 6.2%(보험료 0.75%, 사회보장목적세 5.45%), 노인연금수급자는 연금의 1.4%와 개인연금의 2.4%, 실업자는 표준최소소득의 2%와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보조금의 1%를 건강보험료로 납부
  - 사용자 : 임금총액의 13.1%를 납부
  - 정부 : 자동차보험료 중 12%를 추징하며, 약광고·주세와 사회보장세 중 70%를 건강보험 재원으로 마련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www.nhic.or.kr/portal/site/main/MENU\\_WBDAE0103?purl=/static/html/wbdae/e/wbdae0103.html](http://www.nhic.or.kr/portal/site/main/MENU_WBDAE0103?purl=/static/html/wbdae/e/wbdae0103.html))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 프랑스, (2012.7.)

□ (사회보장부담금 인상) 프랑스 정부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의 기여율을 높여 재

정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보장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사회보장부담금을 일부 인상

○ 2010년 프랑스 정부는 사회보장부담율을 일부 수정<sup>8)</sup>

- 2012년부터 CSG와 CRDS의 납부액에 따라 주어지던 3%의 공제감면 비율을 2%로 인하
-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기여금의 기여율이 4%에서 6%로 인상
-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월소득이 400유로에서 600유로 사이일 경우 7%, 600유로 이상일 경우 14%로 연금 기여금이 상향
- 무상증자와 스톡옵션에 대한 사회보장기여금 비율이 2011년에 고용주는 10%에서 14%까지 증가하고, 피고용인은 2.5%에서 8%로 증가

○ 2012년 세법개정<sup>9)</sup>

- 기존 부가가치세에 포함되어 있던 사회 부가가치세(social VAT)를 폐지
  - 이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는 19.6%에서 21.2%로 증가하지만 고용주에 대한 사회보장 기여의 부가가치세를 1.6% 인하하여 표준 부가가치세는 19.6%로 동일
- 무상증자와 스톡옵션에 대한 사회보장기여금 비율이 2011년 7월 이후 고용주는 14%에서 30%까지 증가하고, 피고용인은 8%에서 10%로 증가

○ 또한 2012년 11월부터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URSSAF(France's social security body)에 지불하는 은퇴 기여금이 고용주의 경우 8.3%에서 8.4%로 피고용인의 경우 6.65%에서 6.75%로 인상 후, 2013년 1월부터는 각각 8.45%와 6.8%로 각각 인상<sup>10)</sup>

---

8) Morgan Lewis  
(<https://www.morganlewis.com/index.cfm/fuseaction/publication.detail/publicationID/0b5fb68c-3329-4ae1-add6-4b101ca56d4e>)

9) Morgan Lewis  
(<https://www.morganlewis.com/index.cfm/fuseaction/publication.detail/publicationID/0811b8bb-0ca9-4053-b929-5061fed3e61>)

10) High Street Partners [다국적 경영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기업]  
(<http://www.hsp.com/newsletter-archive/2012/10/france-finance-act-introduces-changes-social-security-contributions>)

**<Box 4>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재원**

-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은 고용주부담금, 피용자부담금으로 이루어진 사회부담금과 조세인 일반사회보장세(CSG), 사회보장부채상환세(CRDS), 사회보장목적세(ITAF)로 구성됨.
- 일반사회보장세(CSG)의 도입이후 전체 사회보장재원에서 사회부담금과 조세의 비중은 1980년 약 98:2에서, 2009년 약 70:30으로 변화됨.
- 일반사회보장세(CSG)는 임금소득 (7.5%), 임대소득, 투자소득, 양도소득등 (8.2%), 도박수입 (9.5%), 연금수입 (6.2%), 수당 (6.2%)에 부과됨. 사회보장부채상환세(CRDS)는 자산수입, 투자운용수입, 귀금속 판매수입등 임금소득이외의 수입에 0.5%를 부과함. 사회보장목적세(ITAF)는 주류세, 담배소비세, 의약품광고세, 자동차보험료에 부과됨.

내역	근로자	사용자	총보험료율
<b>사회보장</b>			
건강보험	0.75%	12.8%	13.55%
사회연대		0.3%	0.3%
노령연금1	6.8%	8.45%	15.25%
노령연금2	0.1%	1.6%	1.7%
산업재해		업종별 차등	
가족수당		5.4%	5.4%
일반사회보장세(CSG)	7.5%		
사회보장부채상환세(CRDS)	0.5%		
<b>실업보험</b>	2.4%	4%	6.4%

자료 : 국민연금공단, 「프랑스의 연금제도」,  
([http://www.nps.or.kr/html/download/worldwide/data\\_pdf/report/05\\_08\\_01\\_france.pdf](http://www.nps.or.kr/html/download/worldwide/data_pdf/report/05_08_01_france.pdf))

- (고용정책 개선) EU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노령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sup>11)</sup>
  - (주요내용) 노령층에 대한 근로 유인책, 공공고용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 단기

11) EU, 「The National Reform Programme France 2012」, 2012. 4.  
EU, 「Annual Report 2012 Pensions, Health Care and Long-term Care : France」, 2012. 3.

취업자를 위한 정책 방안 등

- ① 2008년 계약종료 이외의 피고용인의 조기퇴직을 단계적으로 폐지
- ② 2009년에는 노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책을 마련
  - 노령층이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 5%까지의 연금 보너스 지급
  - 은퇴하여 연금을 받는 노령층에 대한 보수지급 제한의 해제
  - 자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특별한 허가 없이 70세까지 정년 연장 가능
  - 노령층의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임금의 1%만큼의 벌금을 부과
- ③ 2012년 10월부터 피고용인에 부과되던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감면
- ④ 2012년 1월 프랑스 정부는 공공고용서비스 향상을 위한 3가지 중점방안 발표
  - 구직자들이 장기실업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서비스를 강화
  - 지역 경제와 연계한 구직자 훈련 등을 강화한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 구직자들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자원 효율성 지표 발표 등의 노력지속
- ⑤ 2012년부터 단기 취업자(short time working)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
  - 단기취업자에 대한 1억 유로규모의 특별수당 마련
  - 장기적인 단기취업을 막기위해 단기취업기간을 2개월로 축소

□ (사회부조 개혁) 2009년 이후 프랑스는 사회부조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일을 하는 근로자의 혜택을 늘리고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최소통합수당(RMI)을 폐지하고 활동연대수당(RSA)을 도입<sup>12)</sup>

- 기존 RMI제도는 빈곤층 취업활동 퇴치 및 빈곤 감축이라는 목표로 실행되었으나, 수급자의 장기 실업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RSA 제도를 도입
- RSA는 수급자의 고용복귀와 고용복귀 후 경제적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수급자가 보장소득보다 낮은 2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 프랑스」, 2012. 7.

- RSA는 그 성격 상 최저소득의 보장의 성격이 아닌 근로소득을 보전

- RSA 수급자는 수급을 시작하면서 개별지도상담원을 요청해야하며, 지방정부의 의회 의장은 RSA 수급자를 분류하여 적절한 지도상담원을 배치

**< 프랑스의 최근 복지 개선안 내용 >**

분야	주요내용
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수령 연령 연장(10.10.28. 의회 통과)</li> <li>- 완전퇴직연금 수령 연령 65세에서 67세로 연장</li> <li>• 일부 근로자 연금수령 연령 원상 복귀(12.6.7. 발표)</li> </ul>
보건·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약품 종류에 따른 상환액 차등 지급, 일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상환액 감소, 의료 상담비 증가, 의료부문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증가(10.6 발표)</li> <li>• 의약 제품 및 의료 서비스 가격 인하, 의사 처방전 규제 강화(12.10.1 발표)</li> </ul>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 인상(12.7.1. 시행)</li> <li>• 노령층의 고용촉진 방안 마련(09 발표)</li> <li>- 노령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기업에 대한 페널티 등</li> <li>• 청년 고용촉진 프로그램 발표(12.8.29 발표)</li> <li>- 고졸학력 이하 저소득층 청소년 고용 기업에 최저임금의 75%까지 지급 계획</li> <li>• 공공고용서비스 향상 방안 발표(09 발표)</li> <li>- 실업자 개인지원 강화, 지역 경제 연계 등</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수당(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인상 및 교사충원 계획(12.8.1 발표)</li> <li>- 2013년 교육수당은 6세~10세 아동의 경우 356.2유로(71.23유로 증가), 11세~14세 아동은 375.85유로(75.79유로 증가), 15세~18세 아동은 388.87유로(77.76유로 증가)로 각각 증가</li> <li>• 사회보장 기여율의 변경(10, '12)</li> <li>- 민간주체들의 사회보장 기여율 상향</li> <li>• 2013년 사회복지 관련 예산안 발표(12.10.1. 발표)</li> <li>- '12년 대비 사회보장적자 35억 유로 감소 목표</li> <li>- 담배 및 주류세 인상 등 세수 추가 계획, 의료 가격 인하 등으로 예산 절감 계획 발표</li> </ul>

자료 : BBC, "France's Hollande to lower state pension age to 60",(2012.6.6)

Morgan Lewis (<https://www.morganlewis.com>)

프랑스 사회복지 기금 홈페이지 (<http://www.caf.fr/>)

프랑스 의료보험 홈페이지(<http://www.ameli.fr>)

프랑스 정부 포탈 (<http://www.gouvernement.f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 프랑스」,(2012.7.)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동향, 2012년 9월 1호,(2012.9.)

## 참고문헌

- 한겨레, “좌파 정부의 힘? 올랑드, 연금수령연령 62살->60살로 되돌려”, 2012. 6. 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 프랑스」, 2012. 7.
-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동향, 2012년 9월 1호,(2012.9.)
- BBC, "France's Hollande to lower state pension age to 60", 2012. 6. 6.
- EU, 「Annual Report 2012 Pensions, Health Care and Long-term Care : France」, 2012. 3.
- IGP, 「Summary of Social Security and Private Employee Benefits : FRANCE」, 2011.
- EU, 「The National Reform Programme France 2012」, 2012. 4.
- EU, 「Annual Report 2012 Pensions, Health Care and Long-term Care : France」, 2012. 3.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www.nhic.or.kr/>)
- 프랑스 사회복지 기금 홈페이지 (<http://www.caf.fr/>)
- 프랑스 의료보험 홈페이지(<http://www.ameli.fr>)
- 프랑스 정부 포털 (<http://www.gouvernement.fr/>)
- High Street Partners [다국적 경영소프트웨어 및 서비스기업] (<http://www.hsp.com>)
- Morgan Lewis (<https://www.morganlewis.com/>)

### 3. 스웨덴의 최근 복지개혁

◆ 스웨덴은 2006년 라인펠트 보수정권 이후 복지제도 효율화를 주요 방향으로 복지제도의 지속적 개혁을 시행함. 완전고용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목적으로 실업자, 청년 및 노령층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강화를 중점으로 개혁을 시행하고 있음

- 장기병가, 조기퇴직 등의 복지의존성 저해요인을 제거하기위하여 병가축소, 실업급여 축소 등 일련의 개혁을 단행하며, 근로의욕 저해요인 개선을 통해 복지의 효율화를 강화하는 반면, 경기부양을 위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근로자 소득보존 및 일자리 창출 등 고용정책과 연결하여 시행
- 완전고용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목적으로 실업자, 청년 및 노령층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강화를 중점으로 개혁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금 및 보건·의료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복지개혁을 추진

□ (라인펠트 복지 개혁) 2006년 라인펠트를 총수로 하는 우파정권이 집권하면서 '일하는 복지'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완전고용과 노동시장 활성화를 중점으로 하는 기존 관대한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다양한 복지 개혁을 시행

- 라인펠트 우파연합은 과도한 실업수당 및 병가의 축소와 실업률 하락을 목표로 하였으며, 2010년 재집권은 이러한 정책들이 많은 부분에서 국민들의 이해와 호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 가능
  - 2010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도우파가 중도좌파보다 일을 더 잘하는 것으로 평가<sup>13)</sup>
- 소득세 감면을 통한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병가수당 및 실업수당 축소 등의 근로의욕저하 요인 축소,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한 노동시장 활성화, 여성고용 증대, 경쟁체제 도입과 민영화 등 가족의 책임과 선택권강화 등이 주요 개혁

13) 주스웨덴 대사관 홈페이지

([http://swe.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3097&seqno=856411&c=MODIFYDATE&t=20100104@20101231&pagenum=23&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http://swe.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3097&seqno=856411&c=MODIFYDATE&t=20100104@20101231&pagenum=23&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방향임.

- ① (고용정책 개혁) 궁극적으로 완전고용과 사회적으로 배제된 계층의 감소를 목표로, 완전고용 정책을 위한 노동 유인 정책, 실업자 지원정책, 청년층 및 노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정책 등을 단행
  - 노동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키고자 소득세 감면 및 소득보전 시행
    - 2007년 1월 스웨덴 정부는 근로소득세 인하를 시행
    - 2007년 1월부터 19세~24세의 청년층과 65세 이상의 노령층 고용에 대한 사회보장 기여금 축소
    - 2007년 1월부터 저소득 및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시행
      - 세금감면은 평균세율과 한계세율에 모두 적용되며, 평균세율은 기근로소득자, 한계세율은 신규 근로자의 근로의욕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
    -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보전을 시행하여 총 약 600억 크로네 규모의 소득보전 시행
      - 2007년 1차 400억 크로네, 2010년 3차 100억 크로네 등
    - 2008년에는 기업의 사회보장 기여금과 지불급여세(payroll tax)를 1% 인하
  - "New start job"제도를 도입하여 청년층과 노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지원<sup>14)</sup>
    - New start job 제도에 참여하는 청년층과 노령층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해당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여금을 감면
      - 20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층과 55세 이상의 노령층이 해당
    - 2008년 동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해당 제도 수혜층의 범위를 확대
      - 청년층의 경우 18세부터 24세 까지로 해당 수혜층 확대하였으며, 최소 2년간 시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노동자를 수혜층으로 포함
  -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
    - 19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층의 사회보장 기여금 축소

14) 스웨덴 정부, 「The Swedish Reform Programme for Growth and Jobs 2006 to 2008」, 2006. 11. 28.

스웨덴 정부, 「The Swedish Reform Programme for Growth and Jobs 2008 to 2010」, 2008. 10. 17.

- 청년 등록제를 시행하여 개인이 요구하는 훈련이나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제도화
- 25세 미만의 청년층에게 "Job and development guarantee" 제도를 실시하고 기존 청년 프로그램과 청년 보증제를 대체하고 2009년부터는 총 3단계로 세분화 하여 시행
  - 프로그램은 1단계(150일), 2단계(300일), 3단계(최대 2년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 지원 내용이 차별화
- 20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에 대한 "On Track for a Job" 프로젝트 실시
  - 프로젝트는 인턴십, 교육 등 개인의 직업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
- 노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
  - 65세 이상의 노령층을 고용한 고용주에게 16%의 특별 기여금 감면 제도를 실시
  - "Job tax reduction" 제도를 도입하여 취업한 노령층의 소득세 감면
  - "new start job" 제도를 통하여 55세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 최대 10년간 보조금 지원
- ② (실업급여 축소 및 실업보험 재원조달방식 변경) 실업보험 지원 기간 및 급여 축소, 수급조건의 강화 등 실업급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실업급여 지원체계를 변경하여 재원조달방식을 개선
- 단기적인 실업을 피하기 위해 실업보험의 대기기간을 5일에서 7일로 연장
- 소득비례실업급여의 보상수준이 실직 후 200일 동안 기존 소득의 80%에서 70%로 감소
  - 또한 1일 최대 지급가능 수당의 상한선을 730크로나에서 680크로나로 감소
- 실업급여 수급 조건의 강화
  - 시간제 근로자가 실업보험기금에서 수당을 받는 기간을 75일로 제한
  - 학생신분의 실업수당 신청 금지, 고용상태를 유지하거나 12개월 이상 고용상태에 있었던 피고용자의 경우에만 실업보험기금 가입 허용
  - 그러나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보험료 인하 및 수혜조건 완화
    - 12개월 이상 고용상태유지를 6개월로 감소(2009년 한시적용), 실업자 및 학

생신분의 실업보험기금 가입 허용

- 실업상태가 200일 이내일 경우 최근 소득의 80%, 200에서 300일 사이일 경우 70%로 제한하며 그 300일을 초과할 경우 65%로 제한
  - 만약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450일 까지 70%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450일을 초과하면 65%로 제한
- 실업상태가 300일을 초과한 개인은 교육에 참가하거나 "job and development guarantee"하에서 사회 근로 활동의 의무 부여

○ 실업보험에 대한 보험금 변경 및 재원조달 방식의 변경

- 2007년 채용의 90%를 정부가 부담하던 기존의 재원조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실업보험기금이 기존의 실업보험 비용에 대해 지불하던 자금조달비용 이외에 추가조달 비용이 새롭게 도입
  - 이러한 개인추가비용은 단기실업기금의 1인 월평균 급여지급액과 전체 실업보험기금의 평균 급여지급 차이에 따라 산정
  - 실업보험기금은 추가조달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보험료를 300크로나까지 인상
  - 자금조달비용과 추가조달비용의 총합은 소득비례실업급여 비용을 초과 불가
- 2008년 7월부터 추가조달비용의 폐지 등 실업보험의 재원조달 체제를 일부 다시 변경
  - 2007년 보험료 인상 이후 실업보험기금 가입자의 17%가 탈퇴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2008년 세계 경제위기 등 외부적 위험 요인이 발생
  - 이에 따라 2009년 1월부터 보험료를 50크로나로 인하

③ (병가제도 축소) 병가수당 기준 강화, 병가제도 사용에 대한 개선책 마련, 병가 이후 사회복귀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 병가 중인 사람의 수를 줄이고 병가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골자하는 의료보험 규정이 도입<sup>15)</sup>

○ 병가수당, 산재보험 소득한도 및 소득 기준 변경으로 병가제도를 개선

- 2005년 도입된 고용주의 병가수당 비용 제도를 폐지하여 피고용인의 병가수당 비용 증가

---

15) 스웨덴 정부 영문 홈페이지 (<http://www.sweden.gov.se/sb/d/15471/a/183566>)

- 산재보험(sickness insurance)의 소득한도를 70%로 낮추고, 50%의 가격기준 총량제를 도입하고, 보조금 및 수당의 소득 기준을 미래기대소득에서 과거 지향적 기준으로 변경
- 병가제도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
  - 병가신청절차의 개선 및 병가에 대한 지침을 설정하고, 병가자들의 사회복지 를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시행
  - 1년 이상 병가수당을 받거나 병가로 인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노동 자를 "new start job"에 우선적인 그룹으로 선정
- 2009년부터 병가제도를 사회복지 체인(rehabilitation chain) 제도로 개선
  - 주기적인 근무능력 평가를 도입하여 개인의 근무능력 이용을 개선하고 산재 보험의 법적인 보장 기능을 강화하며 예측 가능한 보험제도를 현실화
  - 병가 수당은 450일 중 364일에 대해서 소득의 80%만큼을 지원하며, 만약 심 각한 부상 등으로 인해 병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경우 최대 550일 이내에서 75%까지 지급
  - 사회복지 체인을 위하여 정부는 34억 크로나를 투입하여 근로건강 서비스의 개선과 실증기반 의학적 사회복지 보증 제도를 시행
  - 근로건강 서비스 개선을 통한 사전적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사전 고용주와 피 고용인 간의 병가 협의를 도출하기 용이하도록 개선
  - 또한 2009년 1월부터 근로자들은 산재보상에 대한 재평가 없이 업무로 복귀 하는 것이 가능
    - 만약 산재로 인한 보상이 1년 소득 보상 한도인 42,800 크로나를 초과할 경우 산재 보상을 절반으로 축소

**< 스웨덴의 최근 복지 개선안 내용 >**

분야	주요내용
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전적립식 개인연금 관리비용 가입자 부담 도입 ('08 도입)</li> <li>- 연금가입자 소득의 0.5%를 관리비용으로 부담</li> <li>• 스웨덴 연금청 신설 및 연금 위원회 설립 ('10 시행)</li> </ul>
보건·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보호법 제정 ('10.7.10 시행)</li> <li>- 환자 대기기간 축소 등</li> </ul>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의 질 강화 방안 마련 ('06, '08 발표)</li> <li>- 교육 예산 증액, 학력고사 의무화, 교육위원회 설립 등</li> <li>• 취업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 ('06, '08 발표)</li> <li>- 청소년의 취업 교육 프로그램 강화, 성인 재사회화 교육 강화 등</li> <li>• 3살 아동의 유아교육을 보편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무료 교육 시행</li> <li>- 무료 유아 교육과 함께 보육 쿠폰(childcare voucher)제도 도입</li> </ul>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시장 참여 유인 증가를 위한 소득세 감면 및 소득보전 시행 ('06.11.28. 발표)</li> <li>• "New start job", "Job and development guarantee", "On Track for a Job"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실업자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06.11.28 발표)</li> <li>- 고용주에 대한 사회보장기여금 감면, 실업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li> <li>•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방안 마련 ('06, '08 발표)</li> <li>• 노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방안 마련 ('06, '08 발표)</li> <li>• 실업급여 축소 및 실업보험 재원조달방식 변경 ('06, '08 발표)</li> <li>- 실업보험 지원기간 및 급여 축소, 수급조건의 강화, 재원조달방식 개선 등</li> <li>• 병가제도 축소 ('11.12.30, '12.2.1 발표)</li> <li>- 병가수당 기준 강화, 병가제도 사용에 대한 개선책, 병가 이후 사회 복귀 지원 등</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방안 ('06, '08 발표)</li> <li>- 주택수당 지원, 국민연금생활 노인 지원, 임대면세 기준 상향 등</li> </ul>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스웨덴 연금제도 개요 및 연금 청구 절차」, ([http://www.nps.or.kr/html/download/worldwide/data\\_pdf/report/05\\_12\\_02\\_sweden.pdf](http://www.nps.or.kr/html/download/worldwide/data_pdf/report/05_12_02_sweden.pdf))  
스웨덴 정부 영문 홈페이지 (<http://www.sweden.gov.se/sb/d/15471/a/183566>)  
스웨덴 정부, 「The Swedish Reform Programme for Growth and Jobs 2006 to 2008」, (2006.11.28)  
스웨덴 정부, 「The Swedish Reform Programme for Growth and Jobs 2008 to 2010」, (2008.10.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 프랑스」, (2012.7월)

## 참고문헌

스웨덴 정부, 「The Swedish Reform Programme for Growth and Jobs 2006 to 2008」, 2006. 11. 28.

스웨덴 정부, 「The Swedish Reform Programme for Growth and Jobs 2008 to 2010」, 2008. 10. 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 스웨덴」, 2012. 7.

EU, 「Sweden's National Reform Programme 2012」, 2012.

국민연금관리공단, “세계의 연금제도: 스웨덴”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스웨덴 연금제도 개요 및 연금 청구 절차」, ([http://www.nps.or.kr/html/download/worldwide/data\\_pdf/report/05\\_12\\_02\\_sweden.pdf](http://www.nps.or.kr/html/download/worldwide/data_pdf/report/05_12_02_sweden.pdf))

스웨덴 정부 영문 홈페이지 (<http://www.sweden.gov.se/sb/d/15471/a/183566>)

주스웨덴 대사관 홈페이지 (<http://swe.mofat.go.kr/>)

#### 4. 독일의 최근 복지개혁

◆ 독일정부는 고용경직성 완화와 경기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실업급여 축소 등의 하르츠 개혁을 지속적으로 실행함과 동시에, 증가하는 의료비용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새로운 의료개혁을 시행

- 높은 실업율과 지속적 경기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르츠법 I-V (2003~2005년)을 통한 노동시장정책의 개혁이 단행됨.
- 하르츠 개혁의 주요내용은 실업급여 축소 및 수급요건 강화, 장기실업자에 대한 실업부조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부조의 폐지, 실업부조와 사회부조를 통합한 실업급여II 신설 (조세재원), 고용보호조항을 완화하여 고용창출을 유도
  - 이후 메르켈 정권에서는 법인세 축소를 통한 기업 투자여건 개선, 육아수당, 장기실업수당 등을 축소하는 복지분야 개혁을 단행
- 독일의 의료보험은 인구고령화, 경기침체로 인한 보험료 수입의 감소, 일부 보험급여 인상, 약제비 인상 등으로 인하여 의료보험의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하여, 의료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민간보험과 공적보험의 공존체제로 진입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들을 시행
  - 본인부담금 인상, 공적질병금고간의 경쟁 강화, 민간보험과 공적보험의 공존체제로의 도입을 위한 일련의 조치등 의료보험제도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의료개혁이 단행
  - 2011년에는 고소득자와 자영업자의 민간의료보험전환 요건을 완화하는 개혁을 시행

□ (보건·의료 개혁) 2011년 의료보험재정법(GKV-FinG)과 2012년 의료보장구조법(GKV-VstG)을 통해 급여 및 의료서비스의 질을 2011년 수준으로 억제 및 유지하고, 농촌지역 등 소도시 지역의 의사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배경) 인구고령화, 경기침체로 인한 보험료 수입의 감소, 일부 보험급여 인상, 약제비 인상 등으로 인하여 의료보험의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하였음. 특히

22011년부터 의료부문에서 약 90억 유로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증가하는 의료비용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새로운 개혁시행

○ (주요내용)

① 의료재정개혁 (GKV-FinG)

- 세입확대 전략

- 소득기반 보험료율을 기존의 14.9%에서 15.5%로 상향조정
- 보험료율 인상의 부담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전가되도록 하여, 보험료율 인상이 고용을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함.
- 보험료율 인상부담의 개인전가를 통해 의료보험 시장의 경쟁을 촉진

- 지출억제 전략

- 2013년까지 의료보험관련 행정비용을 2010년 수준으로 동결
- 급성입원환자 수가인상시 임금상승률만큼만 허용

② 의료구조개혁 (GKV-VstG)

- 농촌지역과 소도시지역의 의사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소도시지역에서도 의사가 활발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개원의의 거주지의무시스템 폐지, 의사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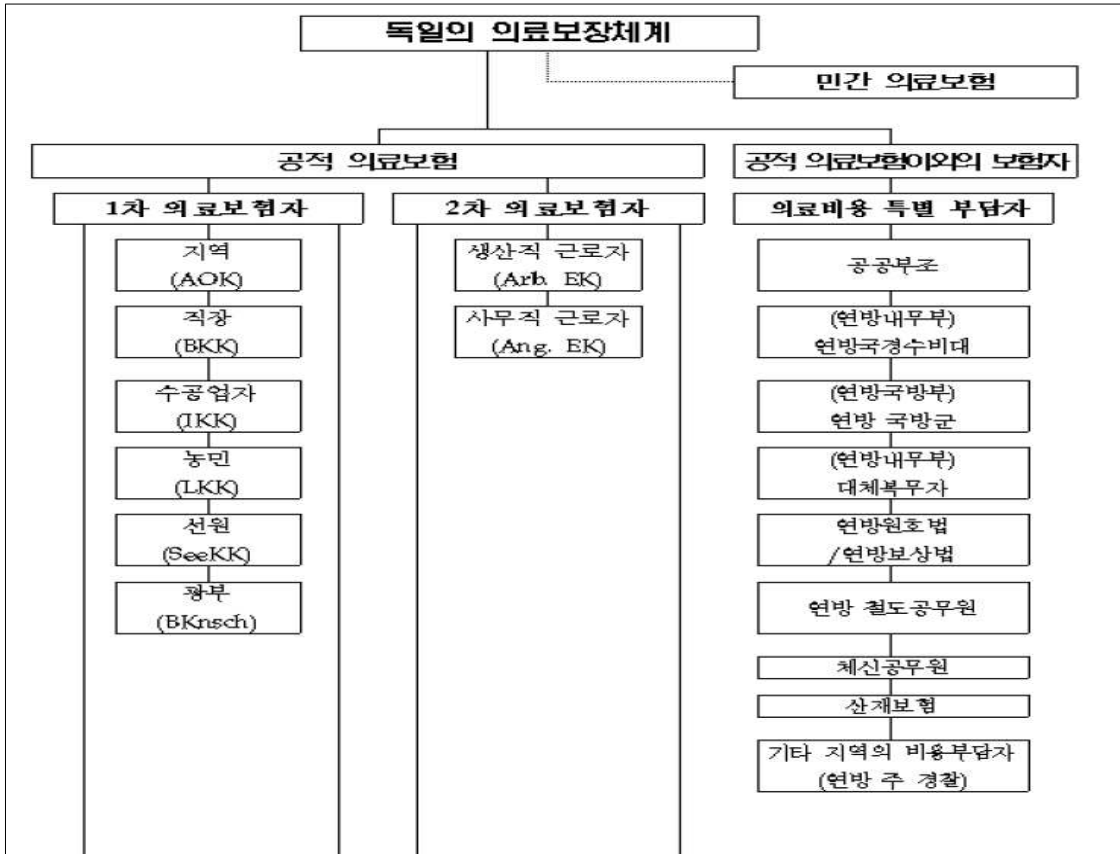
**< Box 6> 독일의 의료보험제도**

○ 적용 대상

- 공적 의료보험제도(GKV)는 일정 소득 이하의 소득계층만 강제가입 대상자로 법제화 하며, 일정 소득 이상의 소득계층은 민간의료보험 선택 가능하도록 개방
- 강제가입 소득 기준은 48,600 유로/년

○ 가입 비율

- 공적 의료보험 87.3%, 공적 의료보험 이외의 보험자 2.4%, 민간 의료보험 10.%, 무보험자 0.2%



자료출처: KBV(2004). Grunddaten zur vertragsärztlichen Versorgung in Deutschland. Berlin.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년도 외국의 복건의료체계와 의료보장제도 연구” 재인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 보험료

- 2009년부터 14%의 동일 보험료율 적용 (2004~2008년은 14.2%)
- 추가 보험료인 0.9%는 가입자만 부담
  - 고용주는 7%, 피보험자는 7.9%(7% + 0.9%)로 고용주의 부담 배려
  - 2010년부터 추가 부과나 상환 가능

□ (노동시장 개혁) 2000년대 초반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일과 근로의 연계를 핵심으로 하는 하르츠(Hartz) 개혁안을 메르켈 정권에 서도 지속적으로 실행

○ (배경) 독일은 2000년대 초반 경제침체에 따른 내수부진과 수출감소 등 외부적 요인과 과도한 사회보장 지출, 경직된 노동시장 등 구조적 요인으로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경험

- 슈뢰더 총리의 독일정부는 아젠다 2010의 일환으로 기업인, 노조원, 상공인, 정치인, 사회과학자들로 구성된 하르츠위원회를 구성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4차례에 걸쳐 개혁안을 발표 (하르츠I~IV)
- (주요내용) Hartz I은 고용창출, II는 사회보장혜택, III은 행정업무절차, 그리고 IV는 행정일원화에 초점을 두어 노동시장 유연화 및 구직자 취업노력 촉진 등의 정책을 실현
- ① (고용 창출) 고용환경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
  - 사설 직업소개소(personal service agency)를 설치하여 실업자의 임시직 배치 또는 직업훈련 등을 지원
  - Mini-jobs 등 저소득직업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 및 사회보장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종전의 월 325유로에서 400유로까지 인상
  - 실업자의 창업 촉진을 위해 연소득 25,000유로까지 소득세를 19.9%에서 10%로 인하
  - 기존의 노동사무소(labor office)를 원스톱 기능을 갖춘 고용센터(job center)로 변경하여 실업자에게 신속한 고용서비스 제공
- ② (고용보호 완화) 해고보호 완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규제 완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10인 이하 사업장에서 신규고용의 경우 해고보호조항 적용 없이 기간제 계약 가능
  - 신규창업의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 해고자 선정기준(social selection criteria)에 해당되는 근무기간, 나이 등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필요한 (지식, 능력 등 감안)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가능
  - 파견 상한기간 폐지 및 평등대우원칙 예외 설정
- ③ (실업급여 축소) 실업보험제도 개편과 함께 실업자의 구직노력 유인도 강화하여 취업능력이 있는 실업자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유도

- 장기실업자에 대한 기존의 실업부조제도를 폐지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부조제도와 통합하여 단일의 실업급여II를 운영
- 실업급여 수급자는 고용중개소의 직업알선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제공되는 적절한 일자리나 직업훈련을 거부하는 경우 급여수급이 잠정적으로 중단
  - 주당 15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자에 한해 이전고용기간에 따라 최장 12개월 동안 실업급여I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실업급여II로 전환
  -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부조 수급자를 실업자로 새로 등록하여 실업급여II를 감액 없이 수급하되 구직노력을 의무화
-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최장 32개월에서 12개월(55세 이상은 18개월)로 단축 (2006년부터 시행)
- 장기실업자에 대해서는 사회부조 수준의 실업부조(월 350유로)를 지급하는 동시에 이들의 취업선택권(turn down job offers)을 축소
- 수급액을 과거소득과 무관하게 책정하여 과거 고소득자의 경우 수급액이 하락하도록 규정하고 직업알선에 응할 의무도 강화(적절한 일자리나 훈련 거부 시 급여액의 30%를 차감)

④ (투자여건 개선)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축소하고 자유로이 해고가 가능한 수습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의 개혁을 추진

○ (정책평가) 고용경직성 완화로 2005년부터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비경제활동인구와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고용호조가 지속

□ (연금제도 개선) 2005년 “국민연금 조직체계의 개혁에 관한 법률”의 발효에 따라 종전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되던 사무근로자연금, 노동자연금, 그리고 광산종사자연금 제도가 단일의 국민연금제도로 통합되어 운영

○ 2009년 기준 국민의 68.7%가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였으며, 공무원, 농업경영자 및 특수직종 자영자를 위한 공제조합제도를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93%가량이 연금제도에 가입 중

○ 2007년 독일 정부는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 및 고령자의 장기근로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급연령의 조정에 관한 법률”을 발의

- 2012년부터 연금수급연령을 65세에서 단계적으로 2029년까지 67세로 인상
  - 수급연령을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매 1년마다 1개월씩 상향조정하고, 2024년부터는 매 1년마다 2개월씩 인상
  - 가입경력이 45년 이상인 장기가입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65세부터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부여
  - 건강 및 개인사유로 인한 조기퇴직은 63세부터 가능하되 매 1년에 대해 3.6%의 감액률 적용
- “고령자 고용기회의 개선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고령자의 장기근로를 지원하고 동시에 2010년까지 55세 이상 인구의 취업률을 55% 수준까지 인상
- 임금보조금, 채용장려금, 직업교육의 지원 그리고 한시적 고용규정을 완화

**<Box 6> 독일의 연금제도**

◇ 연금체계: 국가와 민간의 강제 혹은 자발에 의한 3층 체계

층(Pillar)	적용대상				
	공무원	민간부문 근로자	공공부문 종사자	자영농민 & 배우자	의사 약사, 변호사, 세무사 등
1층 공적연금* (기본보장)	공무원 연금제도	국민연금 제도	국민연금 제도	농민연금 제도	특수직종
2층 기업퇴직연금 (부분적 생활수준 보장)		기업연금	공공부문 종사자 추가보상 제도		자영자 공 제 조 합 제도
3층 개인연금 (완전한 생활수준 보장)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span>세계 적격 사적연금</span> <span>사적연금</span> </div>				

\*공적연금의 가입대상: 모든 근로자, 수공업자 등 일부 영세자영업자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세계의 연금제도: 독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영독일”

○ 노령연금 수급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 5년 이상 가입한 65세 도달자 (2012년~29년까지 67세로 상향조정)</li> <li>• 조기연금: 조건에 따라 가입기간이 35년 이상인 경우 63세부터 지급</li> <li>• 65세 이후 가능</li> </ul> </li> <li>- 보험료율: 19.9% (기준연도: 2007-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노사균등부담</li> <li>• 자영자: 전액 본인부담</li> </ul> </li> </ul> <p>자료: 국민연금관리, “세계의 연금제도: 독일”</p>
--

**< 2011년 이후 독일의 사회·복지지출 축소 내용 >**

분야	주요내용
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보호대상자 (Hartz IV) 관련 연금보험의 국가지원 삭감</li> </ul>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업수당 혜택 축소, 실업급여를 법정(의무)지출에서 재량지출로 전환</li> <li>- 실업상태에서의 창업보조금 폐지</li> <li>- 실업자수당 I에서 II로 넘어가는 과도기 수당 폐지</li> </ul>
육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수당의 단계적 감축</li> <li>- 최대 14개월간 300유로가 지급되는 양육보조금 폐지</li> <li>-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자녀 1인당 월 184유로를 지급하는 양육보조금 등의 혜택 축소</li> </ul>

자료 : 독일 재무부, “2010 긴축재정안”, 한국조세연구원, “최근 경제위기 이후 주요국 재정건전화 정책과 시사점”(2011. 8), “유럽재정위기 대응추이”(2012. 4), “재정동향”(2012. 7)

## 참고문헌

- 김성수, “독일의 복지정책 개혁과 정당구조 변화 - 지난 10년의 현황과 전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1.2
- 독일 재무부, “23rd Subsidy Report of the Federal Government Summary,” 2012.9.2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 독일,” 2012.7
- American Institute for Contemporary German Studies, "Health Care Reform in Germany: 2011 Reform," 2012.4.11
- 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Social Security at a Glance," 2012.1
- 국민건강보험 (<http://www.nhic.or.kr/>)
- 국민연금 (<http://www.nps.or.kr/>)
- 독일 노동사회부 ([www.bmas.de/EN/Home/home.html](http://www.bmas.de/EN/Home/home.html))
- 독일 보건부 (<http://www.bmg.bund.de/ministerium/english-version.html>)
- 독일 보험청 (<http://www.bva.de/>)
- 독일 재무부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Web/EN/Home/home.html>)

## 5. 그리스의 최근 복지개혁<sup>16)</sup>

◆ 그리스 정부는 각종 연금혜택 축소 및 정년연장, 건강보험 지출 제한, 공공부문 인력 및 복지축소 등을 추진하며 중장기 재정 안정화를 추구

-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축기조에 맞춰 전반적으로 복지 축소하는 방향으로 연금, 의료, 노동시장 개혁을 진행
- 연금개혁의 경우, 다른 남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정년연장, 각종 혜택 축소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트로이카(EU-IMF-EBC)와의 합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고 언급

□ (2010 연금개혁: Law 3863/3865) 산재되어 있는 연금시스템을 통합 시스템으로 전환

- (배경) 경제가 악화되고, 2010년 사회보장비용이 GDP의 13%, 2060년에 2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금개혁 등을 통한 예산 절감이 계속 요구
- 연금 100% 조기수령(58세) 기준을 기존 35년 근무에서 37년 근무로 강화
  - 현행 법정 정년이 65세(여성 60세)이지만, 58세에 연금 전체를 조기수령 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이 많이 발생
- 법정 은퇴연령을 남녀 모두 2020년까지 기대수명의 변화를 고려하여 매 3년마다 수정
- 2015.1월부터 연금체계를 기본연금(basic pension)과 보조연금(contributory pension)로 구분하여 운용
  - 기본연금은 360유로로 설정하고, 보조연금은 납입기간과 납입액에 연계되어 지급
  - 조기수령자의 경우, 보조연금 부문이 감소할 예정(조기퇴직 할수록 패널티가 매년 4.5%에서 6%로 상승)

16) Ministry of Labour, Social Security, and Welfare, "Hellenic National Social Report 2012" (2012.6.) & EC, "Annual National Report 2011: Greece"(2011.5) & EC, "Annual National Report 2012: Greece"(2012.3) 재구성

- 연금은 2010, 2011년 삭감되고 2012년에도 삭감될 예정이며 2010년에 보너스 (일명 13월, 14월 연금지급액)는 영구적으로 폐지
    - 월 2,500유로 수급자의 경우, 보너스 폐지
    - 2,500유로 미만인 수급자의 경우, 총 지급액을 €800(크리스마스 400유로, 부활절, 여름 각각 200유로) 제한
  - 공공부문의 경우, 미성년 자녀를 둔 여성의 정년을 현행 50세에서 2011년까지 52세, 2012년까지 5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
    - 2013.1월부터 지속적으로 65세까지 조정
  - 조기퇴직 불이익 조항 신설: 현재 61.4세인 평균 연금수령 개시연령을 2015년 까지 63.5세로 연장하기 위함
  - 연금산정 기준을 현행 '퇴직 직전 일정 기간 연금 기여분'에서 '전체 가입기간 연금 기여분'으로 변경
- **(연금)** 연금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및 혜택의 적절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더욱 단순하고 유연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
- (동향) 2010년 이후, 2011년에 3번(Law 3986, 3996, 4024) 2012년에 2번(Law 4051, 4052)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연금제도를 수정
  - 2021년부터 은퇴연령을 인구통계학적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일반적인 은퇴연령은 65세)
  - 2년마다 연금지출 구조를 상세히 모니터링하기 위한 보험수리적 연구수행을 의무화
    - 연구 결과에 따라 연금지급액을 조정하여 연금지출액이 GDP의 2.5%p(2009년 대비)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
  - 노령연금에 대해 일종의 부담금을 도입하되, 생활수준에 따라 예외를 둠
    - 55세 이하의 수령자 경우, €1,000 초과하는 총 연금액에 대해 40% 삭감하고, 55세 이상 수령자의 경우, €1,200 초과분에 대해 20% 삭감

- 연금액의 3-14%수준의 연대기여금(solidarity contribution, 일명 EAS) 부과
- 13월, 14월 연금지급을 없애고, 대신 €800의 수당 지급
- 보충연금(auxiliary pensions)에 대한 일종의 부담금 도입
- 2014.1.1일부터 GDP 연간 성장률(50%) 및 CPI 연간 변화율(50%)에 근거한 새로운 연금조정규칙을 시행
- 장애연금 자격 관련 요건을 정비하여, 실제로 혜택이 필요한 자를 선별
  - 중앙장애인증 및 감시기관(KEPA)에서 엄격한 무효평가규정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약 10%의 연금수급자들이 감소할 전망트
- 2012.1.1일부터 고위험군 직군(BAE)의 목록을 새로 개정하여 약 180,000명의 근로자가 목록에서 제외되어 혜택을 상실

**<Box 7> 그리스의 연금제도**

◇ 연금체계: 공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 3층으로 구성

층(Pillar)		주요 내용				
		위험보장	가입	수급요건	급여수준	징수 및 지급주체
1층: 공적 연금	복지기금	노령, 장애, 유족	강제	소득/기여	소득연계	국가 및 사회단체
	보충기금			노령/빈곤	상한+ 소득조사	
	기초연금					
	사회연대보조 (EKAS)					
최저연금						
소득보충						
2층: 직역연금		노령	임의	기여	기여수준에 따라	사설기금
3층: 개인연금		노령	임의	기여 /프리미엄	프리미엄/일시금	민간 금융기관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세계의 연금제도: 그리스"

○ 노령연금 수급요건

- 수급요건

- 4500일 이상 납부한 65세(남), 60세(여)
- 10,000일 이상 납부한 62세(남), 57세(여)
- 10,500일 이상 납부한 58세(남, 여)
- 11,100일 이상 납부한 가입자는 어떤 연령에도 완전연금 수령
- 4,050일 이상 납부하고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특정장애가 있는 가입자는 완전연금 수령

- 조기연금

- 1993년 1월 이전 가입하여 최근 5년 동안 100일 근로 포함하여 4,500일 이상 납부한 60세(남), 55세(여)
- 최근 5년 동안 100일 근로 포함하여 10,000일 이상 납부한 60세(남), 55세(여)

- 연기연금 가능

- 노령사회보험(자산조사): 60세 이상의 그리스 거주자

- 자산조사 : 연소득(월급 및 연금)이 €6,824.45 미만 또는 개인 과세소득이 €7,961.87 미만 또는 세대 과세소득이 €12,389.65 미만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세계의 연금제도: 그리스”

□ (의료·보건) 포괄적이고 통합된 의료보험 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련 지출을 GDP 대비 6%를 넘지 않는 것을 주된 목표로 개혁을 실행

- (배경) 의료·보건 관련 지출이 2010년 기준, GDP의 9.7%(OECD 평균 8.8%) 달하고, 그중 공공의료 지출은 60%(OECD 평균 71.8%)에 불과
- (동향) 2010년에 1번(Law 3863), 2011년에 2번(Law 3918, 4025), 2012년에 1번(Law 4052) 의료·보건 부문의 개혁을 진행
- 지출감시장치를 시행
- 유해한 약물 및 유익한 약물목록이 국립의약품기구(EOF)에 의해 확정되어 이미 운영모드
- 정기적인 외래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3에서 €5로 인상

- 전자처방전 시행 등을 통해 의약품 지출을 제한
  - 2011년 관련 지출이 37억유로에서 27억유로로 감소하였고 2012년에는 더 감소할 전망
- 의약품 가격을 EU에 있는 시장 중 가장 낮은 가격 세 곳의 평균으로 설정하는 새로운 의약품 가격시스템(IRP, International Reference Pricing)을 운영
- 인적자원 관리 및 평가를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 공공 의료기관의 통폐합 및 인원 감축 등을 추진
  - 137개의 공공 의료기관을 83개로 통폐합하고, 관리자·고위공무원을 175명에서 144명으로 감축
- 연금관리에서 의료·보건기금(health fund)을 분리
- 과도하게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을 단순화하기 위해 기금을 병합하고 모든 건강관련 활동들을 하나의 부처에서 관리

□ (기타) 공공부문 인력 및 복지를 축소

- 행정부 인력에서 퇴직자 5명 당 1명 고용의 원칙을 담은 2015년까지의 중기인력계획을 발표
- 정부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약 15,000명의 근로자를 예비노동인력(labour reserve)로 이동시키고, 약 15,000명을 조기 퇴직
-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가족수당 삭감

**< 2010년 이후 그리스의 사회·복지지출 축소 내용 >**

분야	내용
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 개혁을 통한 혜택 축소 ('10.5월)</li> <li>• 연금 삭감 ('11.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 1200유로(약 192만원)가 넘는 고액 연금 수령자 연금 20% 삭감</li> <li>- 55세 이전 조기 퇴직자 연금 20% 삭감</li> </ul> </li> <li>• 연금삭감 37.99억유로('12.10월)</li> </ul>
보건·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의료비 감축 21.2억 유로('11.6월)</li> <li>• 건강보험 지출 8.03억유로 감축('12.10월)</li> </ul>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부문 정리해고 요건 완화 및 각종 보수 삭감('10.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리해고 가능 인원을 월 2%에서 월 4%로 확대</li> <li>- 정리해고 보상금 및 초과근무수당 삭감</li> </ul> </li> <li>• 퇴직연령 2년 연장으로 5백만유로 세수 증대('12.10월)</li> <li>• 2011년에 4번(Law 4019, 3996, 3986, 4024), 2012년에 2번(Law 4046, 4052)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 조정 및 비임금 노동비용 동결 등</li> <li>- 기간제 고용계약의 최대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li> <li>- 근무시간 유연성을 높이기 관련 법 개정</li> </ul> </li> </ul>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문 1.32억유로 삭감('12.10월)</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험료 증액 32.46억유로 ('11.6월)</li> <li>• 가족수당 간소화로 4.27억유로 세수 증대('12.10월)</li> <li>• 사회급여(social benefit) 3.47억 유로 삭감('12.10월)</li> </ul>

자료 : 그리스 재무부, "2013 Budget", (2012.10월)  
 그리스 재무부, "Midterm Fiscal Strategy 2012-15", (2011.6월)  
 주 그리스 대한민국 대사관(<http://grc.mofat.go.kr/korean/eu/grc>)  
 한국조세연구원, "유럽재정위기 대응추이", (2012.4월)

## 참고문헌

국민연금관리공단, “세계의 연금제도: 그리스”

그리스 재무부, “2013 Budget”(2012.10)

그리스 재무부, “Midterm Fiscal Strategy 2012-15”(2011.6)

EC, “Annual National Report 2011: Greece”(2011.5)

EC, “Annual National Report 2012: Greece”(2012.3)

Ministry of Labour, Social Security, and Welfare, "Hellenic National Social Report 2012" (2012.6.)

주 그리스 대한민국 대사관(<http://grc.mofat.go.kr/korean/eu/grc>)

## 6. 스페인의 최근 복지개혁

◆ 스페인 정부는 위기상황 극복 및 중장기 경제성장의 기반 마련을 위해 **정년연장과 수급요건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 동등한 의료혜택 보장 및 의료비지출 절감을 위한 보건개혁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장기요양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 시행**

○ 재정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재정지출 절감에서 출발하여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경제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연금개혁 등을 시행

○ 라호이(Rajoy) 총리는 특히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 및 보건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및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시장개혁은 단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언급

□ (연금개혁)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강화(Strengthening the Future Sustainability of the Spanish Pension system)를 위한 연금개혁안 최종 합의(2011. 1. 28)<sup>17)</sup>

○ (배경) 고령화로 인해 연금수령인구가 급증하여 2011년 기준 GDP대비 10.45% (정부예산의 31%) 수준인 연금예산이 2050년에는 15.3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스페인 정부 재정악화의 한 원인으로 지적

○ (주요내용) 정년 연장과 수급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며 2013년부터 2027년까지 점진적으로 시행

-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2년 연장

• 단, 연금납입기간이 38.5년을 넘을 경우 65세 정년 인정 및 위험직군 종사자의 경우 67세 이전 퇴직을 허용

- 급여산정 대상기간도 현행 15년에서 25년으로 확대

- 완전노령연금(full pension)을 받기 위한 연금납입기간도 현행 35년에서 37년으로 확대

- 조기퇴직연금 수급요건을 기존 61세에서 63세로 강화하고 조기연금 수급자들의 페널티를 강화하기 위해 연간 7.5% 감액 지급

17) The Spanish Economy, "Reform of the Pension System" 참고  
(<http://www.thespanisheconomy.com/en-GB/EPMeasures/Paginas/PastdocumentsEconomicPolicyMeasures.aspx>)

- 급여산식에 지속가능성지수(sustainability factor)를 도입
  - 2027년도부터 5년마다 기대수명 등을 고려하여 정년나이 개정
- (경제적 효과) 동 개혁으로 인하여 2050년까지 약 GDP의 3.5%p 재정지출 절감 예상

### <Box 8> 스페인의 연금제도

◇ 연금제도 체계 : 기본연금제도(Basic Level of Protection)와 소득비례 연금제도(Contributory or Professional Level of Protection)로 구성

○ 기본연금제도(Basic Level of Protection)

- 대상범위: 비기여제, 현물 연금제도로서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지급
- 유형: 의료보호(Health Care), 장애연금(Invalidity Pensions), 노령연금(Retirement Pensions), 가족보호(Family Protection), 비기여실업보장(Unemployment Coverage in the Non-contributory level),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 등 5가지 유형을 제공
- 노령연금의 종류와 수급요건

1) 일반 퇴직연금(Ordinary Retirement)

- 수급요건: 퇴직 전 최종 15년 중 보험료 납부기간 2년을 포함하여 총 보험료 납부기간이 15년 이상으로 65세 도달하고, 완전 퇴직한 가입자

2) 조기 퇴직연금(Early Retirement)

- 수급요건: 비자발적인 실업상태에 있는 자로서 연금청구 이전 6개월 이상 구직자로 등록된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이 30년 이상이고 61세 이상 자

3) 부분 퇴직연금(Partial Retirement)

- 수급요건: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61세에 도달한 자로 아래조건 충족시
  - i) 청구인이 근로일수와 임금이 다른 full-time 근로자에 비해 각각 25~85% 감소되는 시간제 계약 체결
  - ii) 65세 미만 청구시 사용자가 다른 실직자와 대체근로계약을 체결, 단 65세에 청구시 사용자와 다른 근로자와의 대체근로계약 불필요

○ 소득비례연금제도

- 사회보험원리에 의한 기여제제도로써 사회보장 일반제도(Social Security General Scheme)와 특별제도(Special Schemes)로 구성
- 사회보장일반제도는 16세 이상인 자로서 다른 특별연금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닌 산

업 및 서비스분야의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임

- 특별연금제도는 공무원, 군인, 자영자, 농업관련 및 소규모 농업인, 어부, 광부 등이 적용대상임

자료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세계의 연금제도: 스페인”

□ (보건개혁) 공공보건제도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of the Public Health)을 위한 보건개혁법안(Royal Decree Law 16/2012) 최종 승인(2012. 4. 20)<sup>18)</sup>

○ (주요내용) 동 개혁은 크게 6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

① 보편성(Universality) 보장

- 공공보건의 보편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보건혜택의 악용을 방지

② 디지털의료 및 공공서비스 예산 편성(E-Health and Common Services Portfolio)

- 거주하고 있는 자치지역에 따라 의료 혜택의 차이가 있으므로 동 개혁은 전 시민이 동등한 의료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 예산을 편성
- 예산의 핵심은 예방, 진단, 처치, 응급의료수송 등을 무료로 제공
- 영국의 NICE(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와 유사한 보건기술평가 및 성과 기관의 네트워크(Network of Agencies for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and Performance)는 공정하고 객관적 관리 하에서 예산을 평가하기 위한 책임이 있음
- 또한 동 법안은 보건제도에 있어서 디지털의료(E-Health) 기술을 도입하여 모든 지역과 디지털 의료기록에 대한 호환성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 검사를 감소시킬 수 있음
- 동 제도로 인하여 최소 7억 유로의 재정절감을 기대

③ 의약품 사용에 대한 부담금 부과 (Supplementary and Portfolio Pharmaceutical Expenditure)

- 공정한 의료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만성질환 또는 소득 및 자산수준을 고려하

18) 보건사회서비스부(Minister for Health, Social Services and Equality), 보건개혁(La Reforma de la Sanidad) 참고 (<http://www.msps.gob.es/en/gabinetePrensa/reformaSanidad/home.htm>)

여 의약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

- 일반적으로 의약품 가격의 10%를 부과하나 비기여 연금수급자의 경우 의약품에 대한 비용이 면제되며 최초로 장기실업자 또한 면제 대상임
- 연간 10만 유로 이상의 소득을 가진 연금수급자의 경우 의약품의 약 60%를 지불(매달 최대 60유로)

- 동 조치로 인하여 약 35억 5천만 유로 비용 절감 예상

### <소득 및 자산 수준별 의약품 사용에 대한 부담금 수준 >

	자산	연금수급자	
비기여연금수급자 및 장기실업자	0%	0%	
18,000 유로 이하 소득	40%	10%	최대 8유로 / 월
18,000 유로 초과 소득	50%	10%	최대 18유로 / 월
100,000 유로 초과 소득	60%	60%	최대 60유로 / 월

자료 : Ministry for Health, Social Services and Equality, "El Gobierno aprueba la reforma que garantiza la sostenibilidad de la Sanidad Pública" (2012. 4. 20)

#### ④ 효율적 조치(Efficiency Measures)

- 동 개혁은 중앙구매방식(Centralized Purchasing Platform)을 도입, 이미 백신을 동 방식으로 구매
- 동 조치로 인하여 최소 10억 유로의 비용 절감 예상

#### ⑤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 보건·의료분야 인력의 전문성 개발을 제고하여 전문인력과 의료서비스 간의 이동성을 용이

#### ⑥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의 통합 (Socio-Health Covenant)

-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 동 조치로 인하여 약 6억 유로의 비용 절감 예상

○ (경제적 효과) 동 개혁으로 인하여 보건·의료분야 지출에서 연간 약 70억 유로 이상의 재정 절감을 기대

□ (장기요양) 경제위기의 여파로 장기요양 지출 축소 및 제도 개선 조치가 시행<sup>19)</sup>

- (지출축소) 장기요양 예산 축소 및 장기요양 현금급여 미수급자의 소급 폐지
  - 장기요양 관련 법 시행 이후 장기요양 예산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경제위기로 인하여 2011년도 예산은 5.2% 감소
  - 최대 6개월간 대기상태에 있는 장기요양 현금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현금급여 소급 폐지(Royal Decree 8/2010)
  - 스페인 신정부는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moderate dependents 그룹 포함) 확대 시행 방안을 1년 연기(2011.12.30, Royal Decree 20/2011)
    - 그러나 일부 자치지역에서는 이미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행
- (제도개선) 요양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감소 및 획일화된 장애판정등급(scale of assessment of dependence)의 변화 등 제도개선 시행
  - 증가하는 장애인 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요양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소하여 서비스 공급 증가(2010.4.9, Royal Decree 6/2010)
  - 다른 자치지역이라도 동일한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수단의 신뢰성을 개선(2011.2.11, Royal Decree 174/2011)

---

19) EC, 「Annual National Report 2012 - Pensions, Health Care and Long-term Care : Spain」 (2012. 3) 참고

**< 2010년 이후 스페인의 사회·복지지출 축소 내용 >**

분야	주요내용
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수령액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자동인상을 중단하고 연금지출증가율을 소폭으로 유지(전년대비 1% 수준) ('10.12.1 발표)</li> <li>▪ 조기정년퇴직제도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3세로 연장하고, 정년퇴직연령은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연장 ('13. 1. 1 시행)</li> </ul>
보건·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지출 절감위해 제네릭(generic) 성분 처방 의무화('11.8 발표)</li> <li>- 의사의 처방전 작성시 용량, 성분명만 기재하고, 약사는 가격이 가장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을 환자에게 제공</li> <li>- 동 조치로 인하여 보건 및 의료분야지출에서 연간 24억유로를 절감</li> </ul>
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도부터 자녀당 2,500유로의 출산장려금 지원 중단 ('10.5.12 발표)</li> <li>- 2007년 출산 장려를 위해 지급됐던 이른바 '베이비수표' 2,500유로를 지급하였으나 2011년도부터 동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li> </ul>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소득실업자 대상 실업수당(월426유로)을 '11년 2월 이후 폐지 ('10.12.1 발표)<sup>1)</sup></li> <li>▪ 2012년도 최저임금(월641.4유로) 동결 ('11.12.30 발표)</li> <li>▪ 경제 및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개혁법안(Royal Decree-Law 3/2012) 최종승인(2012.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교섭 및 기업의 내부 유연성 부여</li> <li>- 노동시장 효과성 제고 및 고용의 차별성(duality) 해소: 기업의 유연성 부여로 고용의 차별성을 해소하여 정규계약 장려, 모든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보상금을 현행 연간 45일분(최대 42개월 수급)에서 연간 33일분(최대 24개월분 수급)으로 축소</li> <li>- 정규계약 촉진: 청년근로자(16~30세) 고용시 최대 3,600유로, 장기실업근로자(45세 이상)고용시 최대 4,500유로까지 세금환급, 30세미만의 최초취업자(first worker)고용시 3,000유로 세금 공제</li> <li>- 근로자 고용가능성 제고: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훈련 및 교육시스템 제공 및 임시고용기관(Temporary Employment Firms)을 설립하여 구직자와 적합한 일자리 매칭 등의 업무 수행</li> </ul> </li> <li>▪ 실업급여 재검토 및 신규 실업수당 수급자 급여수준 60%에서 50%로 삭감 ('12.7.11 발표)</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 노조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 20% 삭감('11.12.30 발표)</li> </ul>

주 : 1)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11년 2월에 최소보조금(Plan Prepara)제도를 한시적(1년간)으로 도입하여 저소득 실업자에 대해 6개월간 월 400유로를 지급하였으며, 동 제도를 6개월간 연장하였으나 2013년 2월 15일까지 추가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

자료 : Ministry of Fi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s, "Additional Fiscal Austerity Measures" (2011. 8), "Urgent measures for economic and social order" (2011.12.30)  
 The Spanish Economy, "Labour Market Reform 2012"  
 주 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 "스페인 경제개황"  
 한국조세연구원, "최근 경제위기 이후 주요국 재정건전화 정책과 시사점"(2011. 8) 및 "재정동향"(2012. 7)

## 참고문헌

국민연금관리공단, “세계의 연금제도: 스페인”

스페인 보건사회서비스부 (Ministry for Health, Social Services and Equality), “La Reforma de la Sanidad”, 2012. 4

스페인 보건사회서비스부 (Ministry for Health, Social Services and Equality), “El Gobierno aprueba la reforma que garantiza la sostenibilidad de la Sanidad Pública”, 2012. 4. 20

스페인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s), “Additional Fiscal Austerity Measures”, 2011. 8,

스페인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s), “Urgent measures for economic and social order”, 2011.12.30

주스페인대한민국대사관 (<http://esp.mofat.go.kr/korean/eu/esp/main/index.jsp>)

한국조세연구원, “최근 경제위기 이후 주요국 재정건전화 정책과 시사점”, 2011. 8

한국조세연구원, “유럽재정위기 대응추이”, 2012. 4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동향”, 2012. 7

EC, 「Annual National Report 2012 - Pensions, Health Care and Long-term Care : Spain」 2012. 3

The Spanish Economy, "Reform of the Pension System", 2011.6.27

The Spanish Economy, "Labour Market Reform 2012", 2012. 5. 17

## 7. 이탈리아의 최근 복지개혁

◆ 이탈리아 정부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금개혁, 지출절감 및 효율성 개선 등을 위한 보건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

- 강도 높은 긴축 재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보험원리를 강화하는 연금개혁,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적인 사회서비스 체제 구축 시도

□ (연금개혁) 지속가능성, 타당성, 공평성, 효율성(Sustainability, Adequacy, Equity and Efficiency)을 추구하는 연금개혁안(Law no. 214/11) 최종 합의(2011. 12. 22)<sup>20)</sup>

- (주요내용) 연금지급연령 상향조정 및 기여기초형 연금제도(contribution-based regime) 이행 등임
  - 연금지급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2050년까지 70세 정도로 증가
    - 남자: 2012년부터 현 65세에서 66세로 연장하고 2021년까지 67세로 연장
    - 여자: 2012년부터 현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고 2018년까지 66세로 연장
  - 2012년부터 소득기초형(earnings-based) 제도에서 기여기초형제도로 전 근로자 확대 적용
  - 연금지급을 위한 최소 납부연한을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 연금지급액을 평생 납입금에 연동
  - 자영업자와 농민의 납입금 인상 및 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
- (경제적 효과) 동 개혁으로 인하여 2015~2035년 중 연금지급액이 매년 GDP대비 0.3~1.3% 축소될 것으로 예상

20) 이탈리아정부, 「National Reform Programme 2012」(2012. 4) 및 한국은행 국제경제정보, “이탈리아의 재정위기 가능성 부각의 배경 및 재정건전화 개혁정책”(2012. 9. 21) 참고

### <Box 9> 이탈리아의 연금제도

◇ 연금제도 체계 : 이탈리아 연금제도는 65세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서는 자산조사를 거친 사회부조적 성격의 사회수당이 제공되고, 소득연계 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 3층 체계.

#### < 이탈리아 연금제도 체계도 >

		보장범위	강제가입 여부	수급자격	급여 수준	재원조달	운영기관	정수 및 지급 주체
3층 제도 (개인저축)		노령, 장애	임의	기여	기여	기여; 완전적립	허가받은 사설 생명보험회사 및 은행	사설기관
2층 제도 (직업연금)		노령	임의	기여	기여	기여; 완전적립	조합, 사설 운영자	사설기관
1층 제도	연금	노령, 고용, 장애, 유족	강제	고용	확정기여 (DC)	기여; PAYG	국가 및 조합	국가
	사회수당	노령	강제	거주	세금	소득조사	국가	국가

○ 노령연금의 수급요건 : 3개의 유형으로 구분

- 1유형: 1996년 이후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
  -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고 65세(여자 60세) 도달자
  - 가입자는 사회수당(연간 5,349.89유로) 120% 이상에 상응하는 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
  - 가입자가 65세 이상이거나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40년 이상인 경우 수급권 취소
- 2유형: 1995년 12월 31일 기준 보험료 납부기간이 18년 미만인 가입자
  - 65세(남)나 60세(여)에 도달하고 보험료 실제납부 및 인정기간이 20년인 자
- 3유형: 1992년 12월 31일 기준 보험료 납부기간이 18년 이상인 가입자
  - 65세(남)나 60세(여)에 도달하고 보험료 실제납부 및 인정기간이 15년인 자
  - 80%이상 장애인 경우 퇴직연령은 60세로 완화(여성은 55세)

자료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세계의 연금제도: 이탈리아”

□ (보건개혁) 국가보건제도(National Health System)에 소요되는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2011년 1월부터 약 1년간 개혁 추진

○ (주요내용) 개혁은 크게 ① 국가보건제도의 지출 효율성 개선 ② 지출 삭감 ③ 의약품 및 의약품 유통시장에서의 경쟁 제고 등임

① 공공보건으로 인하여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재정적자가 큰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국가보건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아래 제도를 도입

- 보건·의료지출로 인한 재정적자가 심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협약 체결 (Piano di rientro)

• 국가는 미래의 적자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의료 시스템을 재정비(제약 지출의 강력한 통제, 보건분야의 신규 채용 금지 등)하는 지방정부에 채무 일부를 보장

• 지방정부는 채무 일부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에 대한 부담(co-payments)을 높이고 증세 방안을 도입해야 함

• 지난 2년간 10개의 지방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동 협약으로 인하여 2010년의 국가보건지출로 인한 적자가 전년대비 28% 감소(2009년 32억 유로 → 2010년 23억 유로)

- 표준비용(standard costs) 및 보상과 처벌(incentives and sanctions) 법안 마련

• “benchmark”메커니즘 개념을 바탕으로 한 “표준비용”제도를 2013년부터 시행, 동 제도는 지역별 보건지출적자 수준에 따라 국가자금을 재분배할 것으로 기대(2011. 5. 6, Decree No. 68)

• 지방정부 및 지방의료당국의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보상과 처벌” 관련 법안 도입, 위에서 언급한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지방정부에는 처벌을 강화하고 국가보건지출을 전체 평균 또는 이하로 유지하는 지방정부에 추가재원을 공급하는 방식임(2011. 9. Decree No. 149)

② 2012~2014년도 동안 약 80억 유로의 지출 삭감을 위한 법 개정 통과(2011. 7)

- 2013년도에 약 20억 유로 절감 (주로 의약품 및 서비스 구입에 대한 조치)

- 2014년도에 약 50억 유로 절감 (50% 이상이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담금(co-payment)으로 충당)

③ 민간부문에서의 경쟁 촉진 및 고용 장려를 위한 정책 도입

- 4,000~5,000개의 약국을 개설하여 제약분야에서 15,000~20,000명의 신규고용을 촉진하고 약국의 운영시간을 유연화
- 의약품의 가격 경쟁력 촉진 위해 환자에게 제네릭(generic) 의약품 권고

**< 2010년 이후 이탈리아의 사회·복지지출 축소 내용 >**

분야	주요내용
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지출을 줄여 연금시스템의 장기 균형 달성 ("10.7.31 발효"<sup>1)</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퇴가능시기를 현행 연 4회에서 1회로 제한함에 따라 2011년부터는 연금수령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2개월(자유직종의 경우 18개월) 후에나 은퇴 가능</li> <li>- 2012년부터 공공기관 여성근로자의 정년을 EU가 요구하는 최대 65세로 연장</li> <li>- 장애자 연금수령 자격심사 강화 및 장애자 서류를 허위로 발급하는 의사에 대한 제재 강화</li> </ul> </li> </ul>
보건·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의료지출을 2년에 걸쳐 총 30억 유로 삭감 계획 ("12.7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조가격(reference price)제도, 중앙구매기구(central purchasing body) 도입, 의료장비 공급금액 및 공급량 5% 감축 등</li> </ul> </li> </ul>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기 퇴직제도 제한 및 고령자(55세 이상) 고용시 인센티브 제공 ("11. 7 월 발표)</li> <li>▪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개혁법안 최종 승인 ("12.6.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법(제 18조)<sup>2)</sup>의 개정으로 근로자의 해고요건을 완화하여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li> <li>- 안정적인 고용형태와 견습직 계약 장려</li> <li>- 새로운 사회보험제도(Assicurazione sociale per l'impiego; ASPI)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되어 2017년도에는 기존의 사회보험을 대체</li> <li>○ 이직수당(mobility allowance),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s), 비농업 일반 실업급여(non-agricultural ordinary unemployment benefits) 등이 동 제도로 대체되고 기존에 제외되었던 단기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실제로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li> <li>○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수급기간(55세 이하 근로자는 12개월, 이상은 18개월)이 길어지나 실직자 및 퇴직자는 기존 수급기간보다 축소될 전망</li> <li>○ 동 제도의 재원은 기간제 및 견습직 계약에 대해 추가적으로 1.4% 및 1.31%의 사회보장부담금을 부과하여 마련</li> </ul> </li> </ul> </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 10% 삭감 ("10.7.31 발효)</li> </ul>

주 : 1) "재정안정 및 경쟁력을 위한 긴급조치법"의 주요 내용임

2) 노동법 제 18조는 15명 이상 고용 기업은 정당한 사유(just cause)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반드시 복직(reinstatement)시켜야 한다는 조항임

자료 : World Socialist Web Site([www.wsws.org](http://www.wsws.org)), "Italian prime minister to cut additional €26 billion" (2012.7.10)

노동사회정책부(Ministero del Lavoro e delle Politiche Sociali), 노동시장개혁법(La riforma del mercato del lavoro è legge)

이탈리아 총리 홈페이지 보도자료(spending review)

(<http://www.palazzochigi.it/Presidenza/Comunicati/dettaglio.asp?d=68656>)

주이탈리아대사관, "이탈리아의 재정감축조치 법령 발효" (2010.8.4),

한국조세연구원, "유럽재정위기 대응추이"(2012. 4)

## 참고문헌

- 국민연금관리공단, “세계의 연금제도: 이탈리아”
- 이탈리아 노동사회정책부 (Ministero del Lavoro e delle Politiche Sociali), “노동시장개혁법 (La riforma del mercato del lavoro è legge)”, 2012. 6. 28
- 이탈리아 재무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National Reform Programme 2012」, 2012. 4
- 이탈리아 총리 홈페이지 (Governo italiano), "spending review", 2012. 7. 5
- 주이탈리아대한민국대사관, “이탈리아의 재정감축조치 법령 발효”, 2010. 8. 4
- 한국은행, "국제경제정보: 이탈리아의 재정위기 가능성 부각의 배경 및 재정건전화 개혁정책", 2012. 9. 21
- 한국조세연구원, “최근 경제위기 이후 주요국 재정건전화 정책과 시사점”, 2011. 8
- 한국조세연구원, “유럽재정위기 대응추이”, 2012. 4
-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동향”, 2012. 7
- EC, 「Annual National Report 2012 - Pensions, Health Care and Long-term Care : Italy」 2012. 3
- World Socialist Web Site([www.wsws.org](http://www.wsws.org)), "Italian prime minister to cut additional €26 billion" (2012.7.10)

## 8. 포르투갈의 최근 복지개혁<sup>21)</sup>

◆ 포르투갈 정부는 재정위기관련 긴축기조에 맞추어 전반적으로 복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되고 있음

- 현재 포르투갈은 높은 해고비용으로 인해, 기업들이 해고가 용이한 저임금의 계약직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환경이 악화되고 경쟁력이 저하
- 고용주의 해고 조건 완화, 휴가일수 및 공휴일 폐지 등 노동법 개정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적극 추진
- 구제금융 지원조건에 맞춘 연금과 의료보험개혁을 추진

□ (연금개혁) 2007년의 연금개혁 이후, 사회보장시스템(SS)에서 의무적으로 연금을 노동시장 참여자에게 제공

- 구제금융 지원 조건에 따라 2012년과 2013년에 연금 지급액 중 1,500유로 이상 분(한달 기준)에 대해 삭감할 것으로 결정
  - 또한 연금의 인플레이션과의 연동은 최저연금을 제외하고 일시 중단
- 2011년에 경쟁력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기여율의 삭감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

○ 2007년 연금개혁의 주요내용<sup>22)</sup>

- 하나의 통합된 사회보장시스템(SS) 내에서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퇴직금을 지급을 목표로 추진
- 노령연금 산정기준을 현행 “최근 15년 근무기간 중 최고 10년 급여 평균”에서 “전체 근무기간의 기여분”으로 변경하면서 연금 지급액이 감소할 전망
- 노령 연금액을 기대수명에 연동하여 2030년까지 매년 첫 연금의 0.5%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 장기 근무자를 장려하기 위해 퇴직급여는 최고 40년 급여 평균으로 산정
- 조기퇴직 연령을 55세에서 57세로 상향조정하고, 조기 퇴직자들은 매달 약

21) EC, “Annual National Report 2012: portugal” (2012.2) 재구성

22) "Portugal agrees pension reform - retirement benefits to fall", Swisslife(2006.10.12)

- 0.5% 연금액을 삭감
- 4630.8(최저임금의 12배)유로 이상 받는 사람들은 연금액 인상이 없음
- 65세 이상까지 일하는 사람은 매달 1%의 보너스를 지급

### <Box 11> 포르투갈의 연금제도

- 포르투갈 연금제도는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로 이원화된 구조로, 사회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서는 사회부조를 제공함. 사회보험은 가입유형별로 당연적용, 임의적용, 특별 제도가 있음.
    - 당연적용: 근로자 및 연간 총소득이 사회급여율의 6배이상인 자영업자
    - 임의적용: 연간 총소득이 사회급여율의 6배이하인 자영업자
    - 특별제도: 광부, 어민, 철도근로자등
  - 노령연금 수급요건
    - 수급요건
      - 65세(남녀 공통) 도달자로서 보험료 납부기간이 15년 이상인 자
      - 실업급여가 소멸된 경우 62세 실업자에게 연금지급, 57세(납부기간 22년 이상 시)에 감액연금 지급가능
    - 조기연금 : 55세 도달하고 보험료 납부기간이 30년 이상인 자
    - 연기연금 : 65세 이후 가능, 70세일 경우 근로활동 은퇴 필수
    - 사회연금(자산조사) : 어떤 기여제 사회보장제도에도 가입되지 않은 65세 이상자
      - 자산조사: 독신 경우 월간 소득이 사회급여율(€419.22)의 30%, 부부인 경우 50%를 초과할 수 없음
    - 노령연대보충급여(자산조사): 65세 이상으로 사회연금수급권이 없는 평생수당수급자, 수급신청 전 최근 6년 이상 국내거주
      - 자산조사: 수급자의 연간소득이 € 4,800 미만이어야 함(부부일 경우 € 8,400)
-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세계의 연금제도: 포르투갈”

- (의료·보건) 포르투갈의 의료보험 시스템(SNS)는 통합된 의료보험 혜택을 사용자가 거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제공받을 수 있어 많은 예산이 필요
- (현황) 2009년 기준 총 의료보험 지출(GDP 대비 10.8%)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공공부문 지출(GDP 대비 7.3%) 증가로 총 지출이 급증

- 구제금융 지원 조건에 따라 의료상담에 대한 사용자요금(user's fee) 인상, 기존 공제항목 개정, 엄격한 자산조사(mean-test)\* 등을 통해 의료보험 지출 분야에 서 2011-13년동안 5.55억유로의 추가 감축을 목표로 개혁
  - \* 국가에서 공적 부조 대상자의 수입과 자산을 조사하여 기준보다 낮을 경우에만 지원
  - 의료상담에 대한 사용자요금은 2012년 초에 5(일반적인 의료 상담)~17.5(병원 응급조치)로 인상
  - 사용자요금 면제 대상자도 자산이 10만 유로 이상이면 요금을 부과
- 2012년 말까지 GDP의 1.25%까지 의약품에 대한 공공부문 지출을 줄이기 위한 비용절감 계획 마련
- 병원 지출에 있어 관리 직원 감축 등을 통해 2억 유로 감축

**< 2010년 이후 포르투갈의 사회·복지지출 축소 내용 >**

부분	내용
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 동결('10.10월)</li> <li>• 연금동결 및 특별세 도입('11.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조정규정 적용 중단</li> <li>- 1,500유로 이상 연금액에 대해 2012년부터 특별세 도입</li> </ul> </li> <li>• 연금의 물가상승률 반영 제도 중지(저소득층은 제외) ('11.8월)</li> <li>• 월 1천유로 이상 소득자에 대한 연금지급액을 삭감('11.10월)</li> </ul>
보건·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약품 보조지원금 감소 등 보건부문 지출 삭감('10.10월)</li> <li>• 약값 및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조금 감소('11.3월)</li> <li>• 사회보장 및 보건지출 감축(GDP의 0.6%)('11.8월)</li> <li>• 개인이 건강비용 관련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현행 30%에서 10%로 축소('11.8월)</li> </ul>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1일 30분 이상 연장('11.10월)</li> <li>•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법 개정 ('12.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내용) 고용주는 해고가 보다 용이해지고 근로자의 복지가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외 근무수당(50%) 및 해고보상금 삭감</li> <li>· 공휴일 및 휴가일수 단축으로 근무일수 연장공휴일 4일 폐지</li> <li>· 샌드위치 데이 근무규정 강화</li> <li>· 고용주의 해고 기준 완화: 일자리 소멸, 신기술 도입 등으로 인한 해고에서 고용주의 권한을 강화</li> </ul> </li> </ul> </li> </ul>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수 재검토, 조달 및 운영비 통제 조치에 대한 효율성 제고 ('11.3월)</li> <li>• 보건과 교육예산은 감축('11.10월)</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생활보조금 예산 20% 감축 ('10.10월)</li> <li>• 고소득층에 대한 가족수당 동결('10.10월)</li> <li>• 근로자의 사회보장 공제율(TSU)을 현행 11%에서 18%로 인상('12.9월)</li> </ul>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kipf 재정동향" 각호  
 한국조세연구원, "유럽재정위기 대응추이"(2012.4월)  
 포르투갈 재무부, "DECLARAÇÃO DO PRIMEIRO-MINISTRO SOBRE O ORÇAMENTO DO ESTADO PARA"(2011.12월)  
 주 포르투갈 대한민국 대사관(<http://prt.mofat.go.kr/korean/eu/pr>)

## 참고문헌

국민연금관리공단, “세계의 연금제도: 포르투갈”

포르투갈 재무부, "DECLARAÇÃO DO PRIMEIRO-MINISTRO SOBRE O ORÇAMENTO DO ESTADO PARA"(2011.12)

한국조세연구원, “kipf 재정동향” 각호

한국조세연구원, "유럽재정위기 대응추이"(2012.4)

EC, “Annual National Report 2012: Portugal” (2012.2)

주 포르투갈 대한민국 대사관(<http://prt.mofat.go.kr/korean/eu/pr>)

## 9. 덴마크의 최근 복지개혁

### ◆ 덴마크 정부는 고용시장 참여 촉진을 중심으로 복지제도 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복지 개선 추진

○ 고용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청년 및 노령층에 대한 취업 지원과 실업자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를 중점으로 복지개혁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금 및 병가제도 등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는 개혁 추진

□ (고용정책 개혁) 덴마크는 2009년부터 청년 실업자를 해소하고 실업자들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고용정책 개혁을 추진

○ (주요내용) 청년실업 해소 정책, 실업자 재사회화 정책 등

① 청년층의 실업자 해소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방안을 시행

- 청년층의 직업 및 교육 훈련을 위한 견습제도, 기술교육, 고등교육 지원, 읽기·쓰기·수학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
-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직업 로테이션(job rotations)을 활성화

② 일반 실업자의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등 상태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 실업자가 선택하는 기술 및 직무 교육, 연수 프로그램시행, 읽기 및 쓰기 능력 강화 프로그램 등을 시행
- 직업 로테이션 제도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노동시장 유연화 활성화

③ 기존 실업급여 지원 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축소

- 실업급여 기간 축소로 인한 실업자의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제공하고 실업급여의 비효율성을 개선

□ (병가제도 개선) 2009년 덴마크 의회는 병가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병가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고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sup>23)</sup>

○ 병가 일수 제한, 병가신청 절차의 변경 등 병가제도 개선안 시행

23) Mondaq (<http://www.mondaq.com/article.asp?articleid=103280>)

- 병가 일수를 제한하여 최대 4주까지를 유급 병가로 인정하고 8주 이상을 병가로 인해 복귀하지 못할 경우 복귀 계획 등을 서면을 통하여 합의 (Retention Plan)
- 병가신청은 고용자와 노동자의 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면담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등의 수단을 동원한 고용자와의 합의 필요

○ fit for work certificate 제도의 시행

- 기존의 medical certificate on inability to work 제도를 폐지하고 병가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근로자가 복귀 후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

□ (연금제도 및 조기퇴직제도 개혁) 2006년 6월 덴마크 정부는 연금제도 및 조기퇴직제도의 개혁안을 발표·시행<sup>24)</sup>하였고, 이후 2011년에는 2006년 개혁안의 개정안을 발표<sup>25)</sup>

○ (주요내용) 연금수급연령 및 조기퇴직 연령 상향, 고령 장애 연금 도입 등

- ① 2006년 연금 개혁안에 따라 조기퇴직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2019년부터 점진적으로 연장되어 2022년에는 62세로 연장하며, 일반 퇴직 연령은 현행 65세에서 2023년에는 66세로 연장되고 2025년에는 67세로 연장
- ② 2011년 연금 개혁안은 조기퇴직연령 연장 시기를 2018년 62세가 되도록 앞당기고 2023년까지 점진적으로 연장하여 64세로 연장
  - 기존 개혁안의 조기퇴직 가능 연령은 62세에서 66세 까지 5년이었으나, 2011년 개혁안은 조기퇴직 가능 연령을 2023년 64세로 연장하여 조기퇴직 가능 기간을 64세~66세인 3년으로 단축
- ③ 2011년 고령 장애 연금(senior disability pension)을 2014년에 도입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

**<Box 12> 덴마크의 연금제도**

24) The New York Times, "Danes review retirement", 2006. 4. 4.

OECD, 「Pension at a Glance」, 2011.

25) EU, 「Annual Report 2012 Pensions, Health Care and Long-term Care : Denmark」, 2012. 3.

◇ 연금제도 체계 : 덴마크의 연금체제는 사회연금, 노동시장보충연금, 개인연금저축의 3층 연금구조임.

	위험보장	가입	수급자격	급여 수준	기금적립	행정 관리	정수 및 지급 주체	
3층 제도 (개인저축)	노령	임의	기여 /프리미엄	기여 /프리미엄	기여 /프리미엄; 완전적립	사실 금융기관	사실 금융기관	
2층 제도 (노동시장연금)	노령;유족	강제	기여	기여에 수준에 따라	기여; 완전적립	사회 단체 (사용자 단체, 노동조합 등)	사회단체가 소유한 사실 금융기관	
1층 제도	법정 제도 (ATP / SP)	노령, 고용, 장애, 유족	강제	기여	완전 적립	기여; 완전적립	국가 및 사회단체	국가
	사회연금	노령, 고용, 장애, 유족	강제	거주	정율+ 소득조사	세금/부과	국가	국가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세계의 연금제도: 덴마크”

○ 1층 연금제도: 사회연금 (기초연금)

- 대상범위: 16세~66세의 모든 거주 국민 및 최소거주요건을 충족하거나 상호협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으로 65세 이상인 자
- 사회연금제도는 개인의 기여는 없으며 재정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
- 연금급여는 공적노령연금, 조기퇴직연금, 연기 연금, 장애연금, 유족급여 등으로 구성

○ 1층 연금제도: 노동시장보충연금 (ATP)

- 법정 보충연금제도로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1층 연금제도이지만, 기금관리적 측면에서는 2층의 성격도 존재함
- 대상범위: 국내에서 고용되어 주당 최소 9시간 이상 노동활동을 하는 모든 피용자
- 근로자 평균소득의 1%를 보험료로 납부(고용주 2/3, 가입자 1/3 부담)하며, 급여 유형은 평생연금, 유족급여 등으로 구성

○ 1층 연금제도: 특별연금저축제도 (SP)

- 법정 보충연금제도로, 저축중대 및 소득재분배를 목표로 강제적용
- 대상범위 : 모든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피용자, 자영자 및 이전급여 수급자
- 총소득의 1%수준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며, 개인적립금과 기금운용 수익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소득비례형태의 연금
- 연금급여는 출산급여, 현금급여, 실업급여등

○ 2층 연금제도: 노동시장 연금제도

- 일종의 기업연금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강제 적용되는 2층 연금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는 기여에 의한 적립방식이나 공무원의 경우는 부과방식 제도가 별도 운영됨.
- 공공부문 보험료율은 12%, 사무직은 15%, 노무직은 9%이며, 사용자가 2/3를 피용자가 1/3을 부담

자료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세계의 연금제도: 덴마크”

□ (보건의료제도) 덴마크는 2011년 적록연합이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기존의 예산체계를 변경하여 자유롭고 동등한 보건의료시스템의 접근성과 예방의 강화를 목표로 2012년, 2013년 보건의료부분에 대한 예산 변경<sup>26)</sup>

- 고용주가 지불하던 건강보험과 보건의료비에 대한 세금면제 혜택 폐지
- 임신치료와 임산부 분야에 대한 이용자의 비용 폐지
- 예방 기금\*에 대한 예산 삭감을 폐지하고, 근로환경청(The Danish Working Environment Authority : Arbejdstilsynet)과 협력부서의 예산을 증액
- 일부 식료품과 주류,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

\* 예방기금은 덴마크 정부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와 질병으로 조기에 은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사회단체·각종협회와 함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

26) EU, 「Annual Report 2012 Pensions, Health Care and Long-term Care : Denmark」, 2012. 3.

### <Box 13> 덴마크의 보건의료체계

○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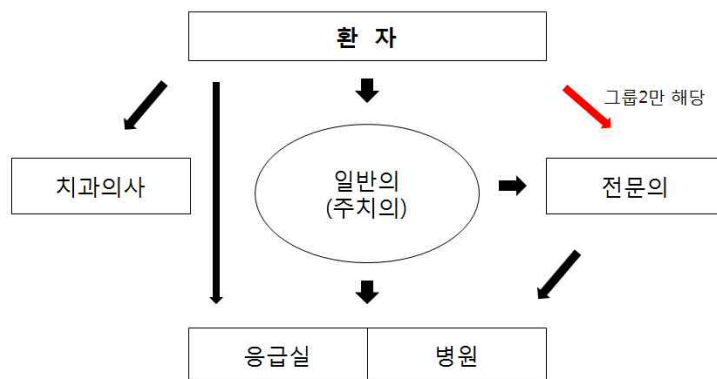
- 질병 공제(Cash sickness), 출산수당 :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
- 의료 수당 : 덴마크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 재원

- 자영업자 : 능력이 없는 첫 두주(아프고 난 처음 두주) 간의 현금 수당 마련을 위한 자발적인 기여
- 고용인 : 피고용인이 최소한 8주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피고용인에 대한 처음 두 주 간의 현금 수당을 제공하며, 의료 수당에는 기여가 없음. 또한 고용인은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수당은 일시적으로 기여해야 함
- 정부 : 지방정부는 3주째 부터의 현금 수당 비용을 부담. 단, 가입자가 고용인으로부터 첫 2주간의 현금 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 전액 부담하며 지방정부는 의료 수당의 모든 비용을 부담

○ 의료전달체계

- 덴마크 국민들은 그룹1과 그룹2라는 의료 체계를 선택
  - 그룹1은 주치의를 통한 1차 진료 이후 전문의의 2차 진료를 받는 형태
  - 그룹2는 1차진료시 주치의와 전문의에서 선택할 수 있으나, 개인 부담금을 지급



자료 : 덴마크 보건복지부, 「HEALTH CARE IN DENMARK」, 2012.에서 수정인용

자료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세계의 연금제도: 덴마크”  
 덴마크 보건복지부, 「HEALTH CARE IN DENMARK」 (2012)

**< 덴마크의 최근 복지 개선 내용 >**

분야	주요내용
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수령 연령 연장(2006년, 2011년 발표)</li> <li>- 조기퇴직제도와 연계하여 연금수령 가능 연령을 67세로 연장</li> <li>• 장애 연금 지원(2011년 발표)</li> </ul>
보건·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가제도 개선(2009년 발표)</li> <li>- 병가제도로 인한 비효율성 감소, 비용절감</li> </ul>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제도 강화 마련 시행 (2011년 발표)</li> <li>- 학급당 학생 수 제한, 수업료 폐지, 위원회 설립 등 교육 시스템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2011년 발표)</li> <li>• 수업료 폐지(2011년 발표)</li> </ul>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층의 실업 해소 및 역량강화 방안 시행(2011년 발표)</li> <li>- 청년층의 실업 해소를 위한 훈련, 교육 등의 프로그램 시행</li> <li>• 실업자 상태개선 방안 시행(2011년 발표)</li> <li>- 실업자들의 훈련강화, 연수프로그램 등 시행</li> <li>• 실업보험수당 제도 개선(2011년 발표)</li> <li>- 실업수당 지급기간 4년에서 2년으로 축소</li> <li>• 조기퇴직제도 개선(2011년 발표)</li> <li>- 2018년부터 조기퇴직 가능 연령을 62세로 연장하고 2023년까지 64세로 점진적 연장</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수당 인하 및 한도 설정('10.6.16 발표)</li> <li>-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만큼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아동 수당 지급 최대 한도 설정</li> <li>•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2012년 발표)</li> <li>-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복지를 위한 방안 마련</li> <li>• 아동 수당 한도 폐지(2011년 발표)</li> <li>- 자녀수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한도를 폐지</li> </ul>

자료 : EU, 「The National Reform Programme Denmark 2012」, 2012. 4.

Mondaq (<http://www.mondaq.com/article.asp?articleid=103280>)

OECD, 「Pension at a Glance」, (2011)

The New York Times, "Danes review retirement", (2006.4.4.)

한국조세연구원, 「덴마크 소득세법 개정」, (2010. 7. 27)

## 참고문헌

- 건강복지정책연구원, “네덜란드의 의료개혁에 관한 연구 : 관리된 경쟁모형” (2008.11)
- 국민연금관리공단, “세계의 연금제도: 덴마크”
- 덴마크 보건복지부, 「HEALTH CARE IN DENMARK」 (2012)
- 한국조세연구원, 「덴마크 소득세법 개정」, (2010. 7. 27)
- EU, 「Annual Report 2012 Pensions, Health Care and Long-term Care : Denmark」, 2012. 3.
- EU, 「The National Reform Programme Denmark 2012」, 2012. 4.
- OECD, 「Pension at a Glance」, 2011.
- The New York Times, "Danes review retirement", 2006. 4. 4.
- Mondaq (<http://www.mondaq.com/article.asp?articleid=103280>)

## 10. 네덜란드의 최근 복지개혁<sup>27)</sup>

◆ 네덜란드 정부는 정년연장, 노동시장 참여 유도, 아동수당 삭감 등을 통해 재정  
의 지속가능성을 추진

- 네덜란드는 연금제도내의 민간부문 비중을 꾸준히 확대하여 왔었기에 연금재  
정불안정 요소는 기타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하였음.
- 이에 따라 복지혜택의 축소보다는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참여  
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인구고령화 등과 더불어  
어 미래 연금재정에 대한 대비책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있음.
- 연금개혁의 주요방향은 퇴직연령 상향조정으로 기타 재정위기 국가들의 개혁  
과 유사.

□ (연금) '11.6월,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연령 상향조정 등을 포함하여  
연금제도를 개정

- 법정 퇴직연령을 기대수명 전망을 반영하여 현행 65세에서 2020년까지 66세로  
2025년까지 67세로 상향조정
  - 최대 5년까지 은퇴를 일찍 하는 경우 매년 노령연금액을 6.5%까지 삭감하는  
반면, 66세 이후로 일하는 경우 매년 연금액을 6.5% 인상까지 인상
- 2013년부터 65세 이후에도 일하는 경우, 노령연금 수령액을 매년 0.6%씩 인상
- 2013년부터 2028년까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노령 연금액을 0.6% 인상
- (기대효과) 연금 수령연령을 2020년까지 66세로 상향조정하여, GDP의 0.3% 상  
당(약 2억유로)의 지속가능성 향상
  - 기대수명과 연동하여 연금 수령연령을 2025년까지 67세, 2030년까지 그 이상  
으로 상향조정된다면 GDP의 0.7% 상당의 지속가능성 향상 기대

27) EC, "Annual National Report 2012: Netherlands"(2012.5) & 네덜란드 경제 농업 혁신부,  
"National Reform Programme 2012"(2011.11). The International Employment Lawyer &  
"Netherlands: Pension Reform Plans and Dismissal of Older Employees"(2011.9) 재구성

### <Box 14> 네덜란드의 연금제도

◇ 연금체계: 공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 3층으로 구성

층(Pillar)	주요 내용
1층: 공적연금 (기초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제가입</li> <li>• 노령기초연금법(AOW), 유족기초연금법(ANW)을 근거로 노령 및 사망위험 보장</li> <li>• 기여+수당형태의 보편적 기초연금</li> <li>• 보험료는 가입자 전적 부담, 부과 방식</li> </ul>
2층: 직역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협약에 의한 의무가입</li> <li>• 연금 및 저축기금에 관련법, EU연금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노령, 사망, 장애위험 보장(단, 사망과 장애는 임의)</li> <li>• 소득비례 및 고용연계 급여</li> <li>• 노사비용분담: 일반적으로 사업주 50% 이상 부담</li> </ul>
3층: 개인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보험사 등이 제공하는 보험에 임의 가입</li> <li>• 세제공제 혜택 등을 통해 가입유인 부여</li> <li>• 기업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 자영업자가 주대상</li> </ul>

자료: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네덜란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 노령연금 수급요건

- 완전 노령연금: 15~65세 사이의 가입(거주)기간이 50년 이상인 65세에 도달자로, 소득이 있는 경우, 15세~65세까지 매년 보험료를 납부
- 감액 노령연금: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연금액이 감액
  - 가입(거주)기간이 50년 미만인 65세 도달자로, 가입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각 연도에 대해 2%씩 감액 지급
- 가정을 구성하는 두 사람이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 부부연금 수급가능
  -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 연령이 낮은 배우자가 수급자의 보조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산조사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퇴직요건은 없으며 EU국가에 거주하고 있거나 상호협정에 의해 급여의 국외지급도 가능
- 조기연금제도 없음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세계의 연금제도: 네덜란드"

□ **(장기요양)** '11.6월, 양질의 장기요양 시스템과 관련 기금 확보를 위해 장기요양 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시행

○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

- 2013년에 현재 AWBZ\*에 포함되어 있는 신체수발 서비스(personal care)를 WMO\*\*로 이전할 계획

\* Algemene Wet Bijzondere Ziektekosten, Exceptional Medical Expenses Act

\*\*Wet Maatschappelijke Ondersteuning; Law on Social Support

- 현재 AWBZ에는 지원서비스, 신체수발서비스, 간호서비스, 치료서비스가 WMO에는 방문돌봄서비스, 식사제공서비스, 주거환경개선 서비스가 포함

○ 등급판정을 보다 엄격하게 진행하여, AWBZ의 포괄범위를 축소

- AWBZ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등급판정은 독립 평가기관(CIZ)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준에 따라 판정

○ 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개인계정(personal budget) 관련 예산 증가로, 2011년에 거주돌봄서비스(현 수혜자의 10%) 사용자만이 개인계정을 유지하도록 개정

□ **(아동·보육)** 보육혜택(childcare benefit) 및 아동수당(child benefit) 관련 지출이 급증하여 제도개혁이 필요

○ 부모들의 노동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육혜택은 일하는 시간에 연계될 예정

- 부모들은 보육혜택을 자녀 1명당 230시간까지 받을 수 있고, 정부는 부모의 고정 기여분(한달 동안) 및 비례조정 기여분을 추진

· 비례조정과 고정기여분을 연계하면서 추가 보육 1시간에 대한 한계비용이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

○ 현재 12개의 부문으로 구성된 복잡하고 일관성 없는 아동수당은 4개부문(급여 지원 부문 2개, 일과 육아의 조합을 촉진하기 위한 부문 2개)으로 축소

**< 최근 네덜란드의 복지 개혁 내용 >**

분야	주요내용
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한 연금제도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11.10월)</li> <li>- “연금개혁” 참조</li> </ul>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퇴직연령을 2019년까지 최소 66세로, 2024년까지 67세로 상향조정</li> <li>▪ 맞벌이 부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 개선</li> <li>▪ 2011년 기준 76%인 경제활동참여율(20-64세)을 2020년까지 8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 추진 (National Reform Programme 2012보고서)</li> <li>- 법정퇴직연령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 2020년까지 66세, 2025년까지 67세</li> <li>- 맞벌이 부부를 장려하기 위해, 부양책임자에게 적용되던 양도세 공제 제도는 2009년부터 15년동안 점진적으로 폐지</li> <li>- 최저임금에 대한 이중세액공제는 2012년부터 20년동안 점진적으로 폐지</li> </ul>
아동·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들의 노동참여 유도를 위한 보육혜택과 노동시간을 연계</li> <li>▪ 복잡한 현행 아동수당을 간소화하여 효율성 제고</li> </ul>
의료·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의 제도(의료보험, 표준형 건강보험, 민영보험)를 하나의 의무적 성격의 민영의료보험제도로 통합 (06.1월)</li> <li>- 정부 역할을 제한하여 민영보험사의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와 의료의 질적 향상을 추구</li> <li>- 보험회사가 의료서비스의 공급 시에, 공급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계약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된 경쟁(managed competition)을 실현</li> </ul>

자료: EC, “Annual National Report 2012: Netherlands”, EC(2012.5)

네덜란드 경제·농업·혁신부, “National Reform Programme 2012”(2011.11)

건강복지정책연구원, “네덜란드의 의료개혁에 관한 연구 : 관리된 경쟁모형” (2008.11)

## 참고문헌

- 건강복지정책연구원, “네덜란드의 의료개혁에 관한 연구 : 관리된 경쟁모형” (2008.11)
- 국민연금관리공단, “세계의 연금제도: 네덜란드”
- 네덜란드 경제·농업·혁신부, “National Reform Programme 2012” (2011.11)
- EC, “Annual National Report 2012: Netherlands”(2012.5)
- The International Employment Lawyer, “Netherlands: Pension Reform Plans and Dismissal of Older Employees”(2011.9)

## 11. 아일랜드의 최근 복지개혁

- ◆ 아일랜드 정부는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연금 지급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
  - 금융위기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긴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정지출 절감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

□ (연금개혁) 아일랜드 정부는 2010년 3월 3일 연금개혁방안(National Pensions Framework) 발표<sup>28)</sup>

- (목적) 저소득층의 연금 범위 확대 및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 동 개혁의 목적임
- (주요내용) 크게 ① 국가연금(State Pensions) ② 자동가입제도(Auto-enrolment) ③ 현행 기업 및 개인연금(Occupational & Voluntary Provision) ④ 공무원연금(Public Service Pension) 등으로 구분됨

### ① 국가연금

- 현행 주당 평균소득의 35% 지급을 유지
- 국가연금 수급연령을 현행 65세에서 2014년 66세, 2021년 67세, 2028년 68세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 2020년부터 연금대상자의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Total Contributions Approach"를 채택
- 2012년부터 12세 이하 자녀 및 장애인을 돌보는 가정주부(Homemakers)에게 최대 520주까지 사회보험료 납부기간 인정(Credit 제도)

### ② 신규 자동가입제도 도입으로 고용주의 책임성 제고

- 22세 이상의 근로자 중 기업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자는 자동으로 가입
- 근로자는 자신의 소득 중 일정부분(%)을 고정적으로 납입하고, 정부와 기업이 일정부분을 기여(matching contribution)

28) 사회보호부(Department of Social Protection) 홈페이지 참조  
(<http://www.welfare.ie/EN/NationalPensionsFramework/Publications/Pages/publications.aspx>)

- 정부의 기여금은 연금납입액의 33% 세액공제 수준
- 근로자들은 매 2년마다 재가입할 수 있으며 5년동안 지속적으로 연금제도에 가입한 자는 1회 보너스 지급
- 신규 자동가입제도는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2014년도에 도입할 계획

③ 기업 및 개인 연금제도 단순화

- 정부는 기업 및 개인 연금에 33% 세액공제 수준의 기여
- 개인연금제도 합리화를 위한 검토 및 규제 강화, 안전한 확정급여형(defined contribution) 모델 마련 등 계획

④ 공무원연금

- 2010년 예산안 발표 이후의 신규 공무원들은 새로운 공무원연금제도를 적용
  - 공무원연금 수급연령을 66세로 상향조정
  - 기존 퇴직직전 보수에 기초한 연금지급을 복무기간 중 평균보수에 기초한 연금지급으로 변경
  - 기존 공무원연금수급자의 인상수준도 기존 퇴직직전 직급의 보수인상수준에 연동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연동으로 변경

<Box 15> 아일랜드의 연금제도

◇ 연금제도 체계 : 비기여제 국가연금(State Pension), 기여제 국가연금, 개인퇴직 저축계좌 제도 등 3층 체계로 구성

< 아일랜드 연금제도 체계도 >

추가연금 (3층)	개인퇴직저축계좌 (PRSA)	가입자가 금융기관과 계약 체결하여 가입
기본연금 (2층)	기여제 국가연금 (State Pension: Contributory)	근로자와 자영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비례 연금을 지급하며 법령에 의해 의무가입 (PRSI Scheme : Pay Related Social Insurance Scheme)
기초보장 (1층)	비기여제 국가연금 (State Pension: Non-contributory)	합법적 거주자에게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조세를 재원으로 자산조사후 연금급여 지급 (Social Assistance Scheme)

○ 노령연금 종류와 수급요건

- 과도기 국가연금(Transition)

- 55세 이전에 제도에 가입한 자가 65세에 도달한 경우 지급
- 연평균 24주 이상 보험료 납부기간 또는 납부인정 기간을 포함하여 총 보험료 납부기간이 260주 이상이어야 함(2012.4.6 이후로 수급개시자는 520주까지 증가됨)
- 최고연금을 수급하기 위하여는 연평균 48주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인정기간)이 필요함
- 66세 이후에는 퇴직여부 조사가 없음
- 연금액은 해외송금 가능하며 66세 도달시 본 연금은 중단되고 기여제 국가연금의 최저연금액이 지급됨
- 부양가족 보충급여(dependent supplement) 지급

- 기여제 노령연금(Contributory Old-age Pension)

- 56세 이전에 제도 가입자가 66세에 도달한 경우에 지급(퇴직요건 없음)
- 66세 도달 전에 연평균 48주 이상 보험료 납부기간 또는 '79.4월 이후 보험료 납부기간이 260주 이상인 경우 지급(2012.4.6 이후로 수급개시자는 520주까지 증가됨)
- 퇴직여부 조사 없음
- 질병, 분만, 영구장애, 실업, 산재 등에 의한 현금급여와 국가연금(과도기)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이 기간은 특정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보험료 납부인정 기간으로 인정
- 부양가족 보충급여 지급

- 비기여제 노령연금(Non-contributory Old-age Pension, means-tested)

- 자산조사에 의함
- 66세 이상으로 자산이 일정액 미만인 경우에 주당 219유로까지 지급
- 부양가족 보충급여 지급
- 고령 독신자 및 특정 벽지 도서 거주자는 추가 지급

- 퇴직전 수당(Pre-Retirement Allowance, means-tested)

- 자산이 일정수준 이하이며, 실업급여를 15개월 이상 수급중인 55~65세 사이에 조기 퇴직한 경우에 지급
- 2007.7.4 이후는 본 수당이 폐지되었으나 기존 지급자는 계속 수급

- 간병자급여와 간병자 수당 등도 노령연금에 포함

자료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세계의 연금제도: 아일랜드"

**< 2010년 이후 아일랜드의 사회·복지지출 축소 내용 >**

분야	주요내용
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연금지급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수행 ("10.3 발표)</li> <li>- "연금개혁" 참조</li> </ul>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자 대상 연료보조비 삭감</li> </ul>
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년 이후 2년간 셋째 자녀에 지급하던 양육수당(child benefit) 감액 (2012년 예산안 발표)</li> <li>▪ 다둥이(multiple births)에 지급되는 일회성 보조금 폐지</li> <li>▪ 입학자녀에게 지급되는 의복 및 신발수당(Back to School Clothing and Footwear Allowance) 지급액 삭감</li> </ul>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업수당(Jobseeker's Benefit) 지급 요건 강화 (2012 예산안 발표)</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사회보장 개혁을 통한 사회보장 지출 상한 설정 ("11.11 발표)</li> <li>- 교육, 보건 등을 제외한 각종 보조금 삭감</li> </ul>

자료 : 아일랜드 재무부, "Summary of 2012 Budget and Estimates Measures Policy Changes"  
 한국조세연구원, "최근 경제위기 이후 주요국 재정건전화 정책과 시사점"(2011. 8), "유럽재  
 정위기 대응추이"(2012. 4), "재정동향"(2012. 7)

**참고문헌**

국민연금관리공단, "세계의 연금제도: 아일랜드"

아일랜드 사회보호부(Department of Social Protection), "National Pensions Framework", 2010. 3

아일랜드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Summary of 2012 Budget and Estimates Measures Policy Changes", 2011. 12.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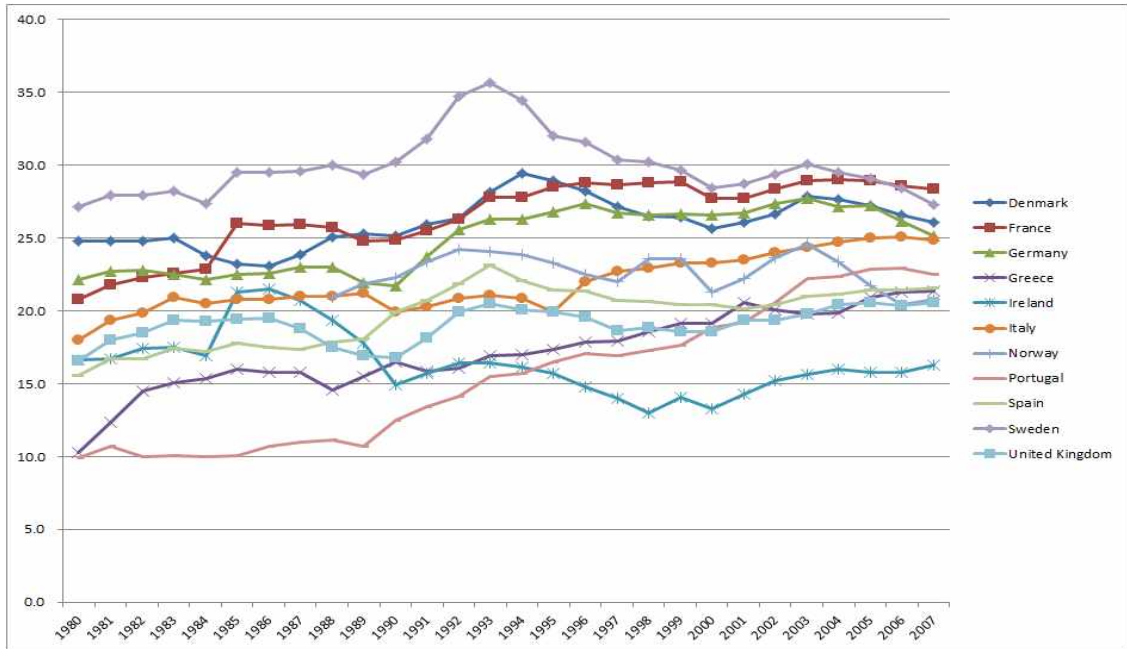
한국조세연구원, "최근 경제위기 이후 주요국 재정건전화 정책과 시사점", 2011. 8

한국조세연구원, "유럽재정위기 대응추이", 2012. 4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동향", 2012. 7

EC, 「Annual National Report 2012 - Pensions, Health Care and Long-term Care : Ireland」 2012. 3

### <부록 1> 공공사회복지지출 추이 (1980-2007)



자료: OECD SOCX database

## <부록 2> 연금체계 비교

### < OECD 주요 국가의 연금체계 >

	1층						2층		
	기초연금			최저 보증 연금	선별적 연금	사회부 조연금	공적관리	사적관리	
	조세방식		보험료방식 (기여심사)					MO	MI
	거주 심사	자산소득 심사							
아일랜드			○						
덴마크		○(소득)					○(DC)	○(DC)	
네덜란드	○						○(DB)		
영국			○				○(DB)		
프랑스				○	○		○(DB+Po)		
독일						○	○(Po)		
그리스				○			○(DB)		
이탈리아						○	○(NDC)		
포르투갈				○			○(DB)		
스페인				○			○(DB)		
스웨덴					○		○(NDC)	○(DB) ○(DC)	

주: 1) DB=Defined Benefit(확정급여형), DC=Defined Contribution(확정기여형), NDC=Notional Defined Contribution(명목확정기여형), Po=Points system(일종의 DB)

2) MO=Mandatory Occupational(강제기업연금), MI=Mandatory Individual account(강제저축계좌형 개인연금)

3) 덴마크는 ATP+SP 모두 MI형태로 운영

자료: 김대철·심해정, 「국민연금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2012. 8

### <부록 3> 공적연금 지출 비중 및 주요 지표 비교

< OECD 주요 국가의 공적연금 지출비중, 수급나이 및 보험료율 비교 >

	공적연금지출비중 (2008년 기준, GDP대비 %)	연금수급나이 (2010년 기준)		공적연금 보험료율 (2009년 기준, %)	
		남성	여성	근로자	고용자
덴마크 <sup>1)</sup>	5.6	65	65	0.0	0.0
프랑스	12.5	61	61	6.8	9.9
독일	10.7	65	65	10.0	10.0
그리스	11.9	57	57	6.7	13.3
아일랜드 <sup>2)</sup>	3.6	65	65	0.0~5.0	8.5~10.75
이탈리아	14.1	65	60	9.2	23.8
네덜란드	4.7	65	65	17.9	0.0
포르투갈	10.8	65	65	11.0	23.8
스페인	8.0	65	65	4.7	23.6
스웨덴	7.2	65	65	7.0	11.9
영국	5.4	65	60	11.0	12.8
<b>OECD 전체</b>	<b>7.0</b>	<b>63</b>	<b>62</b>	<b>8.4</b>	<b>11.2</b>

주: 1) 덴마크의 기초연금은 거주요건과 근로소득조사를 통해 요건 충족시에 지급되며,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됨

2) 아일랜드 공적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수준별 차등부과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기준소득	보험료율
근로자	주당 소득(weekly earnings) 352유로 이하	~127유로	0%
		128~75,036유로	4%
	352유로 초과	75,037유로~	5%
		근로자의 주당소득 356유로 이하	총임금의 8.5%
고용자	356유로 초과	총임금의 10.75%	

자료: OECD, 『Pension at a Glance 2011』, 2011.

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Europe, 2010』, 2010, 8.

이용하,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국제비교 연구」, 2007, 11.